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일러두기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예시는 올바른 인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임. 다양한 학문 분야에 따라 활용되는 인용 방법 및 범위가 다르므로 사례집에 수록된 예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함.
- 아울러 인용표기 방법, 관행, 엄격성 등은 해당 자료의 발표 시기, 학문 분야, 발표 형식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본 책자에 소개된 사례나 설명이 특정 사건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음.

01	표절의 이해	06
	1.1 출처표기의 중요성	08
	1.2 표절이란?	09
	1.3 중복게재의 범위	13
02	인용의 방법	18
	2.1 인용의 원칙	20
	2.2 대표적인 인용표기법	27
	2.3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31
03	유형별 인용표기 적절·부적절 사례	32
	3.1 도서	34
	3.2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회 논문	47
	3.3 연구보고서	68

04 — 온라인 자료 활용 사례 82

4.1 영상자료와 이미지 84

4.2 웹페이지와 블로그 92

4.3 데이터 및 기타 자료 102

부록 118

인용표기 관련 질의응답 사례 120

참고문헌 130



올바른
인용표기
위한 길잡이

01

표절의 이해

- 1.1 출처표기의 중요성
- 1.2 표절이란?
- 1.3 중복게재의 범위

01

표절의 이해

1.1. 출처표기의 중요성

- 타인 혹은 자신의 연구내용을 사용하면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표절 및 중복게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표절과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는 학술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직성을 해치고, 작성한 저작물을 읽는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임. 학술 연구에서 객관성, 정확성, 정직성 등은 매우 중요하며, 이 중 정직성은 출판 윤리의 핵심 요소임.
- 표절과 중복게재는 연구자의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연구자가 타인 또는 자신의 연구내용을 사용할 때 올바른 출처표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출처표기를 누락하거나 혹은 정확한 출처표기를 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함.
- 타인의 학술적 내용을 자신의 논문 혹은 보고서에 인용하는 경우 올바른 출처표기는 원저작자의 학술적 공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표하는 동시에, 자신이 쓴 논문 또는 보고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논문이나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연구자는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원저작자가 작성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출처표기를 통해 해당 부분의 인용 유무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 연구자들이 올바른 인용법을 이해하고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이 속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그가 속한 학문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1.2. 표절이란?

- 표절¹⁾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연구내용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표절은 타인의 논문에서 대부분 혹은 일부를 출처에 대한 표기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심각한 수준부터 실수로 출처표기를 일부 누락하는 경미한 수준까지 그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며, 출처표시를 했지만 인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도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시행 2018. 7. 17)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²⁾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³⁾의 연구윤리 지침(2021. 6. 24 제정) 및 「연구윤리평가기준」(시행 2020. 8. 4.) 그리고 여러 대학교의 「연구윤리 지침」에 잘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그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제1항 제3호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㉗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㉙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㉚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 표절의 한자어인 ‘剽竊’은 ‘검박할 표(剽)’와 ‘훔칠 절(竊)’이 합쳐진 단어로 ‘도둑질하다, 훔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표절의 영어 단어인 ‘plagiarism’은 ‘남치자’를 뜻하는 ‘plagiarus’, ‘훔치다’의 의미를 가진 ‘plagiai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함.

2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를 ㉗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㉘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㉙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칙」(제정 2021. 8. 9.)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를 ㉗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㉘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㉙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㉚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㉛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3호에 표절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고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고에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타인의 연구를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협의의 표절과 함께 “자기표절(self-plagiarism)” 및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를 포함한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를 표절에 포함하여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① 아이디어 표절

- 아이디어 표절은 ㉠ 타인의 고유한 생각이나 연구 착상, 분석 체계나 방법, 논문의 전개방식과 결론을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주제로 다루어진 가설이나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자기가 최초로 주장하거나 만들어낸 것인 양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 학술발표에서 들었거나 개인적인 교신을 통해 들었던 타인의 아이디어를 마치 내 것인 양 쓰는 경우, ㉣ 연구비나 논문의 심사를 통해 심사자는 피심사자의 글에서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의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인용을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임.⁴⁾

② 텍스트 표절

-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표절의 유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원저자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텍스트(단어, 문장, 문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copying)하는 행위로 복제 표절(verbatim plagiarism; copying)이라고도 함.
- 학술지 게재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투고 논문이나 연구비 신청을 위한 연구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원저자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텍스트 표절에 해당됨.

③ 짜깁기 표절

- 타인의 여러 원저작물에서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로, 모자이크 표절(mosaic

4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22.

plagiarism, 또는 patchwriting, paraphragism)이라고도 함.

- 짜깁기 표절은 타인의 글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져와 짜깁기하여 쓴 글로, 복제 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음.

④ 말바꿔쓰기 표절

- 타인의 주장을 내 글에 소개하면서 원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 단어를 비롯해 글의 구조를 바꾸면서 그 뜻만을 살려 표현하는 말을 바꾸어 쓰기(paraphrasing)하거나, ㉡ 그 내용을 압축하여 기술하는 요약(summarizing)을 하는 경우로, 말바꿔쓰기(paraphrasing) 표절이라고 함.
- 학술 연구 활동에서 “직접 인용”이 아닌 “간접 인용”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용어(표현 방식)로 다시 말바꿔쓰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함.

⑤ 데이터 표절

- 원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데이터(그림, 표, 그래프, 사진 등)를 자신의 저술에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져와 쓰는 행위로 데이터 표절이라고 하며, 이는 타인의 것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복사(copying)하는 행위 이므로 복제 표절에 해당함.
- 리뷰 논문의 경우 그 특성상 타인의 논문에 실린 데이터(그림, 표, 그래프, 사진 등)를 직접 제시하면서 해당 연구결과를 설명해야 함. 참고로 원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면 표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데이터의 사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따라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출판사 등)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함.



-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혔어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 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음.

① 잘못된 전문인용

- 타인의 글을 소개할 때,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많은 양의 글을 문단 그대로 옮겨 (copy and paste) 쓰는 경우는 대부분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 전문인용을 할 때, 들여쓰기와 따옴표(quotation marks)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 없이 출처만 표시하면서 그 글을 문단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 텍스트의 어느 부분이 가져온 글이고 저자 자신의 고유한 글이 어느 부분인지를 독자가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② 포괄적·개괄적 인용

- 텍스트에서 인용한 글 각각에 대해 일일이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글의 맨 앞 또는 맨 뒤에서 이하 사례에서와 같이 한번 포괄적으로 출처표시를 하는 것을 포괄적 인용이라 하며 이 경우도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 잘못된 전문인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어느 부분이 가져온 글이고 저자 자신의 고유한 글이 어느 부분인지를 독자가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③ 부분적·한정적 인용

-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중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는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④ 2차 문헌 표절

- 원문을 직접 보지 않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재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는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규칙(2021. 8. 9.) 제9조 제2항에는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적절한 출처표시의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고서의 경우 관련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음.



-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면서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이전의 원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표절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는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함.
-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표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함.
- 전문 학술지의 출판 원칙이 다른 학회지에 출판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저작물의 전체나 일부분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표절에 해당됨.

1.3. 중복게재의 범위

-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는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 국내에서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시행 2018. 7. 17)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정의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에 표절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타인의 연구를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표절과 함께 자기표절 및 이중게재를 포함한 중복게재가 표절에 포함되어 있음.
-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는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국내외적으로 많은 학술 단체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엄밀히 말해,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는 남의 글을 훔쳐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자신이 발표한 과거 저작물의 일부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은 출판사와 맺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자 새로이 발표하는 글의 학술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임.⁶⁾ 또한 학술적 가치가 크지 않은 논문을 손쉽게 만들어

6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0.

내어 쉽게 논문실적을 쌓는 부당한 행위로, 연구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

- 일반적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학회나 학술지를 발간하는 출판사에 저작권 양도(copy right transfer)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므로, 자신의 논문이라도 저작권은 학회나 출판사가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므로 이 경우 이미 학술지나 기타 저작물에 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을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는 반드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승인(copy right permission)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활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함.



중복게재의 유형

- 학문 분야에 따라 중복게재의 유형은 다양하여 획일화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복게재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음.

① 전형적인 중복게재

-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㉓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㉔ 이미 게재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가 전형적인 중복게재의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연구자는 연구 논문 등을 작성할 때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아울러 번역 출판임을 명시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번역 출판을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국문으로 발표한 후 해외 독자군을 위해 자신의 이전 결과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표하는 경우 원 논문의 출처를 밝히고,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

② 논문 쪼개기

-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서 연속 논문을 제외하고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중복게재를 쪼개기 출판(fragmented publication) 혹은 살라미(salami) 출판이라고 함.
- 이를테면 연구결과를 분할하는 것으로, 한 편의 논문은 방법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한 편의 논문은 대상 중의 일부를 강조한다든지, 동일한 데이터를 다르게 분석한다든지 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함.⁷⁾
- 이는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논리적으로든 내용의 완성도든 의미가 있는데, 업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연구자료를 '최소 출판 단위(least publishable unit, LPU)'로 잘게 잘라내어 각각을 하나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임.⁸⁾
- 논문 쪼개기 중복게재의 특성은 비교되는 두 저작물 사이에 서로 출처(cross reference)를 언급하지 않으며, 참고문헌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임.

③ 논문 덧붙이기

- 논문 덧붙이기는 논문 쪼개기와는 정반대로 이미 출판된 논문에 일부 결과를 추가해서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논문을 출판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이전 논문에 일부 결과나 대상자의 수를 덧붙여 출판하는 것으로 제목은 다르지만 이전 연구와 겹치거나 연관된 측면을 보고하거나 저자의 순서가 다르거나 저자가 아예 다를 수 있음.⁹⁾
- 논문 덧붙이기는 이전 논문과 대상이 중복되고 결론의 핵심적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미 출판된 논문에 비해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크지 않아 신규 논문으로서의 독창성 혹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논문 덧붙이기 중복게재의 특성은 비교되는 두 저작물 사이에 서로 출처(cross reference)를 언급하지 않으며, 참고문헌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임.

7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8.

8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8.

9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8.



-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시행 2018. 7. 17)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및 여러 대학교의 연구윤리지침에 잘 명시되어 있음.
- 연구의 독자성 혹은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이 작성한 부분에 비해 주(主)가 된다면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시행 2018. 7. 17)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 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 하고 있음.
- “부당한 중복게재”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중복게재를 한 후 그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임.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올바른
인용표기
위한 길잡이

02

인용의 방법

2.1 인용의 원칙

2.2 대표적인 인용표기법

2.3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02

인용의 방법

2.1. 인용의 원칙

-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각 학문분야의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되게 인용부호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함.
- 연구자의 인용 목적은 ㉠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 ㉡ 공통 되거나 상반되는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 자신의 학술적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고자 기존에 출판된 연구 논문의 권위에 의한 도움을 받기 위해, ㉣ 참고문헌을 통해 해당 논문을 읽는 독자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임.
-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전자는 인용 부호(quotation mark)를 사용하여 다른 연구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글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임.
- 올바른 인용은 논문과 보고서 작성에서 타인의 글을 활용할 때 기본적인 윤리 이고 예의임. 또한 인용은 연구자가 원저자에게 그의 글과 아이디어에 대해 인정 (credit)을 한다는 표시이며, 표절의 문제없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¹⁰⁾
- 인용은 원래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밝히는 것이고, 저자의 아이디어를 더 많이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을 쉽게 해주며, 인용을 통해 독자는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저작물에서 적절하게 인용 해야 함.¹¹⁾
- 인용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 (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둘째,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10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6~117.

1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6~117.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함.¹²⁾

- 표절은 일차적으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발생하므로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또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인용을 제대로 해야 표절을 예방할 수 있음.¹³⁾
- 즉,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되 그것이 공정한 인용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정한 인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단순히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함. 둘째, 가급적 나의 저작물에서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음. 셋째,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물이 그에게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됨.¹⁴⁾
- 올바른 인용 방식은 국가마다 학문 분야별로 서로 달라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정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저자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타인의 저술에서 인용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히 밝히면서 원저작자의 학술적 기여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임.
- 학문의 발전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선행 연구 아이디어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때 원저자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활용해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당하게 인용해야 함.
- 정당한 인용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다른 연구자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이들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때 존중과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임.
- 저작권법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그 인용 목적도 보도, 비평,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만 인정하고 있음.¹⁵⁾

1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6~117.

13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6~117.

14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6~117.

15 「저작권법」(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8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제37조 제2항에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본적인 인용 방법¹⁶⁾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 일부 단어를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타인이 학술적 기여에 대하여 인정하고 감사해야 함.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해당 부분은 인용 부호(“ ”)뿐만 아니라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여 해당 부분이 타인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출처를 밝혀야 함.
- 자신의 저작물에서 기술하는 부분이 특별히 인용할 필요 없는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함.
- 웹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 또는 단행본에 있는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때처럼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 통계 자료와 같이 본인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는 출처를 밝혀야 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윤리 평가기준에 기본적인 인용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특히 ㉠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하며, ㉡ 표, 그림,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여야 하며, ㉢ 원본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표기와 원본 수정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말바꿔쓰기 방법

-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인용의 분량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종이 되고 자신의 것이 추가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을 짧게

16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8~119.

인용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그 인용의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할 수 있음.¹⁷⁾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학문 분야별로 오랫동안 활용해온 출처표시 방법에 따르면서 그 인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¹⁸⁾
- 학술 연구 활동에서 직접 인용이 아닌 간접 인용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용어(표현 방식)로 다시 말바꿔쓰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혀주어야 함.
- 원저작물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저술에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표현을 바꾼다고 해도 표절에 해당됨.
-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 연구자는 원저작물에 있는 원문과 거의 비슷한 말로 쓰지 말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새로이 작성하되 출처표시를 하여야 함.
- 말바꿔쓰기를 했지만 타인이 쓴 독특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 부호를 표시해 주어야 함.



출처표기의 대상

-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한 자료가 출판되었든 출판되지 않았든 출처표기를 명확히 해야 함. 그래야 다른 연구자들이 인용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또는 관련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기준 제13조에는 연구자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출처표기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는 ㉠ 인쇄된 자료로 책, 학술 논문, 신문, 학술대회 발표자료(proceeding) 등 출판된 모든 자료, ㉡ ProQuest와 Lexis-Nexi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개인이나 단체 및 정부 또는 기관 웹사이트, 블로그,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있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출판된 것이거나 인터넷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것 등 전자 자료, ㉢ 정부가 출판한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지표 등 데이터, ㉣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이미지, ㉤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오디오 파일(podcasts) 등의 기록물, ㉥ 개인과의 대화, 인터뷰, 강의나 포스트 세션 그리고 학술 세미나

17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19.

18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19.

등에서 얻은 정보 등 구두자료(spoken material) 등 임.¹⁹⁾

- 그러나 비공개 전문가 토론 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 자료, 정부부처 비공개 자료, 발주기관 비공개 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①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 출판

- 학계에서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용어와 형식을 바꾸어 다른 학문 분야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발표하는 것을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이란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음.
- 국문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재발표하는 이차출판을 위해서는 ㉓ 논문을 발표한 국내 학술지의 편집자로부터 자신의 논문을 번역하여 이차출판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㉔ 번역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국제학술지의 출판사 혹은 편집장으로부터 이미 발표한 논문의 번역본 투고에 대한 저작권 승인을 얻어야 하며, ㉕ 이 번역논문이 심사를 통과해서 출판될 때, 그 논문의 첫 페이지에 “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first reported in Korean Journal of---”와 같이 출처정보를 밝혀야 함.²⁰⁾
-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됨.
-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몇 개의 논문에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는 중복게재 중 논문 쪼개기인 살라미 출판에 해당될 수 있음.
- 살라미 출판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여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연구의 특성과 분량으로 인해 몇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논문 혹은 이미 투고되어 심사 받고 있는 논문 원고의 존재에 대해 출처표시를 하여야 함.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2020, p.56.

20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 (http://www.icmje.org/publishing_4overlap.html)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

②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사이의 인용

학위 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는 경우

- 학위 논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동료심사(peer review)의 절차를 거쳐서 보다 완성도 있는 논문으로 출판되어 동종 분야 학계의 학자들에게 전파되어 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됨.
-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매우 장려되어야 할 학자들의 중요한 학문 활동이나, 학문 분야별로 출판 허용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 예로서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술지 논문 첫 페이지 하단이나 각주로 해당 논문이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논문 투고 전 해당 학술지의 출판 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연구자들이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출판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출판하여야 함.

학술지 논문을 학위 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 다수의 이공계 학과에서는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발표 실적을 요구하며, 학위 연구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한 이후 학위 논문 작성 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본인의 연구내용(데이터와 텍스트 모두)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논문의 한 저자인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 논문에 삽입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할 수 있음.
- 타인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인용표기 없이 그 부분을 자신의 학위 논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타인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 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면 텍스트 표절과 데이터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하여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을 해야 함.

③ 학술대회 초록과 프로시딩²¹⁾

- 학술대회 발표 초록과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에 제시하였던 자료와 그림은 추후에 본인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 사용될 수 있음.
-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아직 검증받지 아니한 가설을 여러 분야의 동료들에게 보여주어 이의 타당성을 묻는 연구 활동의 일부임.
- 초록은 하나의 완성된 논문이 아니며, 연구실적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학술대회 프로시딩은 일반적으로 한정된 부수만이 출간되며 그 보급 경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열람이 어려운 문헌으로 분류되는 회색문헌(grey literature)으로 간주됨.
- 동료심사를 거쳐서 논문을 엄격히 선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시딩의 논문은 대부분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학술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구두로 또는 포스터를 통해 학술대회장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추후에 학술지 논문에 발표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용인되고 있음.
- 다수의 인문·사회 및 공학 분야 학회에서는 프로시딩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있고, 프로시딩 발표 후 정식 논문으로 게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학술대회 프로시딩 자료 혹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함.
- 그러나 프로시딩 등 학술 대회 발표 논문이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개된 후 이를 정식 학술지 논문으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표하는 경우 이중게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학술지 투고 시 “본 논문은 다른 매체에 발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저자 서약을 위반하기 때문임.

21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5.

- 프로시딩 등 학술 대회 발표 논문으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연구내용의 일부가 이미 학술대회에 프로시딩으로 발표된 사실을 밝히고, 새 논문이 과거에 발표된 프로시딩에 비해 어떠한 새로움과 학술적 기여가 있는지를 밝히고 논문 편집자의 승인을 받아 출판하여야 함.

2.2. 대표적인 인용표기법

- 학문 분야나 학술지마다 인용 방법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논문 작성 시 반드시 학술지가 요구하는 형식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인용표기를 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어문학, 인문학 분야는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양식을 주로 사용하며, 사회과학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 일반적인 문헌 인용은 시카고(Chicago) 양식, 생·의학분야 및 간호·보건학 분야의 학술지들은 밴쿠버(Vancouver) 양식, 화학 분야의 학술지는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양식, 생물학 분야 학술지는 CSE(Council of Science Editors) 양식, 전기·전자공학 분야는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양식을 사용하고 있음.

①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

- 미국심리학회와 형식으로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건 및 간호학 분야 학술지에서 기본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APA 양식은 본문의 인용하는 부분에 (저자-연도) 형식으로 참고한 문헌의 정보를 제공하고 논문 참고문헌 부분에 본문에 인용한 문헌을 저자 이름 가나다, 알파벳 순서로 기술하며, 학술지명 등은 보통 Full Name을 사용하고 저자명은 성, 이름 이니셜로 기술함.

〈참고. APA 인용 예시²²⁾〉

구분		예시
도서	일반형식	Author, A. A. (Year). <i>Title of book: Subtitle of book</i> (Edition). Publisher.
	참고문헌	Jackson, H. (2012). <i>Strategies today: The best strategy to build a house</i> . Penguin Random House.
	본문 내 인용	(Jackson, 2012, p. 34)
정기간행물 (논문)	일반형식	Author, A. A. (Year). <i>Title of article. Title of Periodical</i> , Volume(Issue), pages. DOI
	참고문헌	Ramirez, B. (2011). Having a powerful headline is important. <i>Modern Writers Journal</i> , 32(6), 4-6. https://doi.org/10.35759.30495.30495.4506
	본문 내 인용	(Ramirez, 2011)
웹페이지	일반형식	Organization. (Year, Month Day). <i>Title of webpage</i> . Website name. URL.
	참고문헌	University of Oxford. (2021, January 20). <i>Organization</i> . University of Oxford. https://www.ox.ac.uk/about/organization
	본문 내 인용	(University of Oxford, 2021)

②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양식

- 미국 현대 어문학 협회의 양식으로 인문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1951년 William Riley Parker에 의해 “MLA Style Sheet”로 발표된 것이 그 시초임.
- MLA 스타일은 내주(in-text citation)-참고문헌(reference) 방식을 사용하는데,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을 간략하게 표시하고 완전한 인용 정보는 참고문헌에서 찾는 방식임.

22 Appearance Publishers, 『APA/MLA guidelines: Concise Guide to APA and MLA Styles』, 2021, pp.87-91.

〈참고. MLA 인용 예시²³⁾〉

구분		예시
도서	일반형식	Autuor's Last Name, First Name. <i>Book Title: Book Subtitle</i> . Publisher, Date.
	참고문헌	Garcia, Savannah. <i>A Surprise Birthday Party: When the Last Bell Goes</i> . HarperCollins, 2018.
	본문 내 인용	(Garcia 79)
학술논문 (인쇄)	일반형식	Autuor's Last Name, First Name. "Article Title." <i>Publication Title</i> , vol.#, no.#, Date, pp.#-#.
	참고문헌	Moore, Josiah. "Writing and Performance as Path." <i>Social Action</i> , vol. 3, no. 14, 2020, pp.213-25.
	본문 내 인용	(Moore 213)
웹페이지	일반형식	Author's Last Name, First Name. "Webpage Title." <i>Website Name</i> , Publisher, Date, URL. Accessed Date.
	참고문헌	Edwards, Oliver. "Liberty is Not Anarchy." <i>Geomaterials</i> , 22 Oct. 2017, www.geomaterials.com/libertyisnotanarchy/. Accessed 11 May 2021.
	본문 내 인용	(Edwards)

③ 시카고(Chicago) 양식

- 시카고 양식은 1906년 시카고 대학 출판부가 저서와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체제와 형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작성한 한 장 분량의 기준이 모태가 되었음.
- 시카고 양식은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는데 각주-참고문헌(Notes-Bibliography) 형식으로 출처 표기 부분 문장에 숫자를 삽입하여 각주(미주)로 처리한 후 문서 마지막의 참고문헌 리스트에서 모든 참고문헌을 정리함.

23 Appearance Publishers, 『APA/MLA guidelines: Concise Guide to APA and MLA Styles』, 2021, pp.195-209.

〈참고. 시카고 인용 각주-참고문헌 형식²⁴⁾〉

구분		예시
도서	각주	##. Author's First and Last Names, <i>Title of Book: Subtitle of Book</i>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s Name, Date of Publication), page numbers.
	참고문헌	Author's Last Name, Author's First Name. <i>Title of Book: Subtitle of Book</i> .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s Name, Date of Publication.
학술논문 (온라인)	각주	##. Author's First and Last Name, "Title of Article: Subtitle of Article," <i>Title of Journal</i> Volume Number, Issue Number (Date of Publication): page numbers.
	참고문헌	Author's Last Name, Author's First Name. "Title of Article: Subtitle of Article." <i>Title of Journal</i> Volume Number, Issue Number (Date of Publication): page numbers.

④ 밴쿠버(Vancouver) 양식

- 1979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종합의학학술지 편집인 일부의 비공식 모임이 있었고, 여기에서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형식과 지침을 만들어서 밴쿠버 양식이라 불림.
- 국제 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의 '의학 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관한 권고안'(ICMJE Recommendations)으로 발전됨.
- 밴쿠버 양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인용 형식을 기본으로 만들어져서 인용 형식에 관련된 부분은 NLM 양식과 동일함.
- 문헌 인용에 한하여 밴쿠버, NLM, The Uniform Requirements(ICMJE Recommendations)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각 학술지에 따라 표현되는 이름은 다를 수 있음.

²⁴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2018, pp.151-153.

2.3.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 연구자는 자체 검증을 위한 보조도로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절이 의심스러운 성과물을 1차 선별할 수 있음.
-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기본 어절의 수는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이는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을 1차로 선별을 하기 위한 기계적 기준을 위해 설정된 값임.
- 동일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검사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 및 확보 자료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산출한 수치이므로 모든 학문 분야의 절대적인 표절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음.
- 표절 여부는 학문분야별로 인용의 방식이나 허용되는 범위 등과 관련한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만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

올바른 인용표기 위한 길잡이

본 사례집은 가상의 문헌 등을 예시로 하여 인용표기 방법을 서술하였음.

학문 분야의 다양성, 예시 자료의 유형별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사례 인용 방식은 참고자료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03

유형별 인용표기 적절·부적절 사례

3.1 도서

3.2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회 논문

3.3 연구보고서

03

유형별 인용표기 적절·부적절 사례

3.1. 도서

“

타인의 저서 내용을 짜깁기하여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내용을 구성한 경우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해당 사례는 두 가지 점에서 ‘짜깁기 표절’에 해당함. 타인(1)의 저서 중에서 단어를 추가 또는 동의어로 대체하거나 문장의 일부를 조합하여 변형했음에도 원저자의 저작물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타인(2)의 저서에서 두 문장을 가져왔으나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짜깁기해서 한 단락을 재구성하였음.
- 일반적으로 한 저작물에 인용 출처 표시가 없을 때, 그 저작물은 저자 자신의 고유한 연구로 인정됨. 따라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연구자 자신의 글과 타인의 글을 교묘하게 혼합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독자를 혼동시키는 ‘짜깁기 표절’ 행위는 심각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복수의 텍스트에서 내용과 문장을 짜깁기한 경우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 경험 없이는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함. 하지만 ‘짜깁기 표절’은 명백히 의도적인 표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절 의혹 시비가 불거지면 상세한 사항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할 것임.
-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원고에 활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가 우선시되므로, 사소한 간접인용도 원본 텍스트의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마땅함. 또한 적절한 인용을 하고 출처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과도한 분량을 타인의 저작물에 의존하여 자신의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원저작물



타인(1)의 저서

1990년대의 한국 사회는 이른바 ‘신인류’가 주도하는 ‘포스트 혁명의 시대’였으며, 그 과정에는 유례없이 폭발한 대중의 정치적 감수성이 큰 역할을 했다. 즉 그것은 구태의연하게 이어져오던 군부독재정권의 탈환을 가져온 대중투쟁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자 권위적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민주주의의 승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 사회운동사의 절정기였던 1991년 봄 전염병처럼 번저간 젊은이들의 잇따른 분신자살을 시작으로 그 거대한 혁명적 열정이 급격히 냉각되어버렸는데, 이때가 이른바 ‘분신정국’이었다.

타인(2)의 저서

분신정국을 초래한 1991년 5월 투쟁은 강경대 폭행치사사건으로 촉발되었다. 학생들은 전국 사립대학 평균 15.5%에 달하는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반대 시위를 벌였고, 시위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대가 사망한 것이다.

부적절한 인용 예시



그것은 대중투쟁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민민주주의의 승리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결실을 이룩했다. 그런데 1991년 봄, 청년들의 연이은 분신자살을 시작으로 혁명적 열정이 급격히 냉각되어버렸는데, 이 시기가 바로 ‘분신정국’이었다. 분신정국을 초래한 1991년 5월 투쟁은 강경대 폭행치사사건으로 촉발되었다. 학생들은 전국 사립대학 평균 15.5%에 달하는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반대 시위를 벌였고, 시위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대가 사망한 것이다.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그것은 대중투쟁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민민주주의의 승리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결실을 이룩했다. 그런데 1991년 봄, 청년들의 연이은 분신자살을 시작으로 혁명적 열정이 급격히 냉각되어버렸는데, 이 시기가 바로 ‘분신정국’이었다.[1] 분신정국을 초래한 1991년 5월 투쟁은 강경대 폭행치사사건으로 촉발되었다. 학생들은 전국 사립대학 평균 15.5%에 달하는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반대 시위를 벌였고, 시위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대가 사망한 것이다.[2]

■ 각주 [1] 김성희,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 다래출판사, 2021, 258쪽.

[2] 장연수, 『한국 청년문화사』, 도서출판 이우, 2022, 68쪽.

“

자신의 저작물을 출처표기하지 않고 인용한 경우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해당 사례에서, 과거에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다음의 연구에 활용했으나 인용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의 연구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가상 사례의 저자는 ‘(가명)이명진’으로, 저자는 자신이 발표한 이전의 저작물에서 일부의 내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각주 [1]’의 인용표시를 통해 밝혀야 함.
- 또는 “졸저, 『(가상 저서)미국의 히피문화』, 호원출판사, 2019, 14쪽.”으로 표시해도 무방함. ‘졸저(拙著)’란 자신의 저작물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므로, 이미 발표된 자신의 저작물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임.
- 인용과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도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 일부를 인용 표시 없이 새로운 저작물에 재활용함으로써 마치 별개의 저작물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자기표절’이라고 하며, 하나의 연구를 복수의 연구업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독자와 기관을 속이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됨.

부적절한 인용 예시



- 하단의 가상 원고의 원저자는 ‘(가명)이명진’으로, 본인의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를 사용하였음.

“1962년 5월 3일, 주지사가 인종차별”. 이렇게 영화 <헤어스프레이>는 실업과 범죄와 빈곤, 그리고 인종분리정책에 의한 흑인차별 의식이 만연한 미국 사회의 부정적 계기를 1960년대의 볼티모어를 통해 재현했다.

볼티모어를 배경으로 한 또 다른 미국 드라마 <더 와이어(The Wire)> (2002~2008) 역시 볼티모어의 거주자들이라면 쉽게 눈치 챌 법한 그 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빈민가의 생태를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묘사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마약, 범죄 등 인종적 소외문제를 섬세하게 조명한 것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1]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볼티모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인종 갈등, 젠더 불평등, 성소수자, 노조 문제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들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각주 [1] 이송희, 『미국 인종차별의 역사』, 미래사, 2021, 32쪽.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1962년 5월 3일, 주지사가 인종차별”. 이렇게 영화 <헤어스프레이>는 실업과 범죄와 빈곤, 그리고 인종분리정책에 의한 흑인차별 의식이 만연한 미국 사회의 부정적 계기를 1960년대의 볼티모어를 통해 재현했다.[1]

볼티모어를 배경으로 한 또 다른 미국 드라마 <더 와이어(The Wire)> (2002~2008) 역시 볼티모어의 거주자들이라면 쉽게 눈치 챌 법한 그 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빈민가의 생태를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묘사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마약, 범죄 등 인종적 소외문제를 섬세하게 조명한 것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2]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볼티모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인종 갈등, 젠더 불평등, 성소수자, 노조 문제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들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각주 [1] 이명진, 『미국의 히피문화』, 호원출판사, 2019, 14쪽.

[2] 이송희, 『미국 인종차별의 역사』, 미래사, 2021, 32쪽.



참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2장 제8조

제2장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제8조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중복게재·출간의 제한)

①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6.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7.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간하는 경우
 8. 그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

저자가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의 출처만
표시하고 2차 문헌 재인용을 누락한 채, 외국어로 된
문헌을 번역하여 인용한 경우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서로 다른 저자가 동일한 1차 문헌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용한 의도는 각자 다를 수 있고, 또 앞선 저자가 원문에 변형을 가해서 인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차 문헌에 인용된 원문을 재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더욱이 2차 문헌에 인용된 원문에 오류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될 수 있음. 따라서 2차 문헌에 인용된 1차 문헌을 재활용할 때는 반드시 2차 문헌에서 재인용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1차 문헌과 2차 문헌의 출처를 모두 밝혀 주어야 함.
- 인용은 원문(1차 문헌)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신의 저작물에 인용을 할 때는 꼭 원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함. 2차 문헌에는 1차 문헌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인용되거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원문과 달리 인용이 된 경우가 매우 많음. 만약 원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차 문헌(원문)과 2차 문헌(재인용)의 출처를 함께 밝혀야 함.
- 외국어 문헌을 직접 번역해서 자신의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 문헌의 출처를 표시해야 함. 또한 외국어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 문헌을 1차 출처로 하고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차 문헌(원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와 원문 해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인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문헌과 2차 문헌의 출처를 모두 표기해 주어야 함.

원저작물



인용 원문(1차 문헌)

『東京新聞』, 1943. 8. 8. 3면.

崔承喜の舞踊は今、重大な転機を迎えている。今回の鑑賞会を見て思
い出すのは、石井さんから洋舞を学んだ彼女だが、独立後、朝鮮舞踊を
通じて崔承喜舞踊を創建し、まずはその芸術が完成したのだが、再び東
洋舞踊という新しい境地に入ろうと数年間、公演の度にその試作を行
っている。このような彼女の活動は賞賛に値するが、今日の成果を見る
と、巨開は未成品で、彼女が収めた朝鮮舞踊の成果と比べて東洋舞踊
は少し距離があるようだ。それゆえにこの困難をどう克服するかが彼
女にとって重大な転機になりそうだ。

재인용 원문(2차 문헌)

정병호, 『춤추는 최승희』, 수신사, 1995, 39쪽.

최승희의 무용은 지금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감상회를 보고 생각
나는 것은 이시이 바쿠에게 양춤을 배웠던 그녀이지만 독립 후 조선무용을
통해 최승희 무용을 창건하여 우선은 그 예술이 완성되었던 것인데, 또다시
동양무용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려고 몇 해 동안 공연 때마다 그 시험
작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그녀의 활동은 찬양할 만하나 오늘의 성과를
놓고 볼 때 거개는 미완성품으로 그녀가 거둔 조선무용의 성과에 견주어
동양무용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그녀에게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으로 보인다.[1]

[1] 『東京新聞』, 1943. 8. 8. 3면.

부적절한 인용 예시



가령 1943년 8월 8일 일본 제국극장에서 개최된 제1회 최승희 무용관상회의 프로그램은 일본무용 3편, 중국무용 3편, 조선무용 7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 이 프로그램에 조선무용 편수가 더 많았다고 해서 최승희가 ‘조선적인 것’을 우위에 두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동양무용’ 중심의 프로그램은 태평양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프로파간다로 기획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공연을 관람했던 일본의 무용평론가 에구치 히로시(江口博)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최승희의 무용은 지금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감상회를 보고 생각하는 것은 이시이 바쿠에게 양춤을 배웠던 그녀이지만 독립 후 조선무용을 통해 최승희 무용을 창건하여 우선은 그 예술이 완성되었던 것인데, 또다시 동양무용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려고 몇 해 동안 공연 때마다 그 시험 작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그녀의 활동은 찬양할 만하나 오늘의 성과를 놓고 볼 때 거개는 미완성품으로 그녀가 거둔 조선무용의 성과에 견주어 동양무용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그녀에게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으로 보인다.[2]

-후략-

각주 [1] 강만식, 『최승희 평전』, 설강, 2021, 291쪽.

[2] 『東京新聞』, 1943. 8. 8. 3면.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가령 1943년 8월 8일 일본 제국극장에서 개최된 제1회 최승희 무용관상회의 프로그램은 일본무용 3편, 중국무용 3편, 조선무용 7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 이 프로그램에 조선무용 편수가 더 많았다고 해서 최승희가 ‘조선적인 것’을 우위에 두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동양무용’ 중심의 프로그램은 태평양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프로파간다로 기획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공연을 관람했던 일본의 무용평론가 에구치 히로시(江口博)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최승희의 무용은 지금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감상회를 보고 생각나는 것은 이시이 바쿠에게 양춤을 배웠던 그녀이지만 독립 후 조선무용을 통해 최승희 무용을 창건하여 우선은 그 예술이 완성되었던 것인데, 또다시 동양무용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려고 몇 해 동안 공연 때마다 그 시험작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그녀의 활동은 찬양할 만하나 오늘의 성과를 놓고 볼 때 거개는 미완성품으로 그녀가 거둔 조선무용의 성과에 견주어 동양무용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그녀에게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으로 보인다.[2]

-후략-

■ 각주 [1] 강만식, 『최승희 평전』, 설강, 2021, 291쪽.

[2] 『東京新聞』, 1943. 8. 8. 3면. (정병호, 『춤추는 최승희』, 수신사, 1995, 39쪽에서 재인용)

“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한 글에 상세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하여 원저자와
인용자의 글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원저작물의 상당량을 직접 혹은 간접인용하면서도 그것을 세심하게 구분하여 각각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했다는 사실만 두루뭉술하게 밝힘으로써 어디까지가 원저작물을 인용한 부분이며 어디까지가 자신이 직접 쓴 부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 특히 원저작물을 인용한 부분이 원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일 경우, 아무리 인용 출처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출처표기의 목적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충실한 연구 태도라고 볼 수 없음.
- 인용은 직접인용(큰따옴표)과 간접인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대한 출처를 각각 표시해야 함. 부적절한 인용 예시에서 각주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인용이므로 큰따옴표 표기를 하고 각각 원문의 출처를 표시해야 함. 각주 [2]의 포괄적 인용표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저자의 글인지 분명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원저자의 주장을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인 것처럼 보이는 혼란을 일으키므로, 본문에서 활용한 인용 부분은 일일이 출처표시를 함으로써 자신의 문장과 원저자의 문장을 명확히 구분해 주어야 함.
- 원고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구별해서 인용 출처표시를 해두는 습관을 길러 두는 것이 바람직함.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일일이 인용 출처표시를 한다면 포괄적 인용표시를 할 만한 요소는 거의 사라질 수 있음. 최근에는 표절에 대한 윤리 기준이 엄격해 지면서 포괄적 인용표시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부적절한 인용 예시



이때 채동선은 민족문화 육성을 지향하는 ‘전조선문필가협회’ 부회장(1946. 3), ‘고려음악협회’ 회장(1947. 3), ‘고려합창협회’ 회장(1949. 1)을 맡으며 우익 민족주의 진영 문화예술단체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채동선이 주도한 ‘고려음악협회’는 순수한 음악예술의 연구와 창작 급(及) 연주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근세주의와 비조선적 유물론을 배제하는 민족자결정신 하에 모든 음악활동을 하자는 악우(樂友)들이 단결되어 결성된 것이었다[1].

경제의 민주화와 정치의 민주화, 인간의 본연성인 유심적 인생관 예술관을 갖고 자유를 요구하는 예술가적 정신과 순수예술형식을 지향했던 채동선은 해방 정국에 이르러 음악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식민지시기에 순수 가곡 창작과 국악·민요의 채보·편곡에만 몰두하며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채동선은 해방 이후에 와서야 민족음악 수립과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한 건국이념 구현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치적 방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의 정치적 참여 그 자체가 민족적·국민적 양심과 예술가적 정신, 그리고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2]

- 후략 -

각주 [1] ‘고려음악회’에 대해서는 유혜경, 『채동선음악예술의 문화사적 가치』, 『한국음악예술』 제34집, 2021 참조.

[2] 채동선의 해방 이후의 행적은, 강지선, 『채동선의 가곡 연구』, 『서양음악』 제27집, 2019 참조.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이때 채동선은 민족문화 육성을 지향하는 ‘전조선문필가협회’ 부회장(1946. 3), ‘고려음악협회’ 회장(1947. 3), ‘고려합창협회’ 회장(1949. 1)을 맡으며 우익 민족주의 진영 문화예술단체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채동선이 주도한 ‘고려음악협회’는 “순수한 음악예술의 연구와 창작 급(及) 연주를

목적”[1]으로 한 단체로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근세주의와 비조선적 유물론을 배제하는 민족자결정신 하에 모든 음악활동을 하자는 악우(樂友)들이 단결되어 결성된 것”[2]이었다.

“경제의 민주화와 정치의 민주화, 인간의 본연성인 유심적 인생관 예술관을 갖고 자유를 요구”[3]하는 예술가적 정신과 순수예술형식을 지향했던 채동선은 해방 정국에 이르러 음악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문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식민지 시기에 순수 가곡 창작과 국악·민요의 채보·편곡에만 몰두하며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채동선은 해방 이후에 와서야 민족음악 수립과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한 건국 이념 구현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치적 방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의 정치적 참여 그 자체가 민족적·국민적 양심과 예술가적 정신, 그리고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4]

각주 [1] 김지홍, 『고려음악협회 탄생』, 『동심일보』, 1947. 3. 28. 2면.

[2] 채동선, 『조선악단의 운명은 어디로 가려는고』, 『협성일보』 1936. 8. 2. 2면.

[3] 채동선, 『유심적 예술관』, 『동아일보』, 1936. 7. 3. 3면.

[4] 강지선, 『채동선의 가곡 연구』, 『서양음악』 제27권 제1호, 2019, 52쪽 참조.

참조: 연세대학교 연구출판윤리

포괄적 혹은 부분적 출처표기

- 포괄적인 혹은 부분적인 출처표기로 독자가 인용문과 원문 출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게 하는 행위
- 포괄적 출처표시: 문단, 소제목 등 모호한 위치에 출처 표시
- 부분적 출처표시: 인용한 부분 전체에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인용 첫 문장, 첫 단어 등 좁은 범위에만 인용 표시

3.2.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회 논문

“

서론에 타인이 작성한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누락한 경우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부적절한 인용 사례는 서론(introduction)에 기 출판된 타인의 논문 [J. Kim, K. Pyo, D. Lee, W.-Y. Lee, J. Electroanal. Chem. 880 (2021) 114851] 서론 부분에서 3개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문단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였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표절에 해당함.
- 일반적으로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²⁵⁾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됨.
- “타인의 아이디어”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 분석 체계, 연구 방법, 논리 및 가설, 이론, 결과에 대한 설명, 결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타인의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자신의 아이디어가 생겼거나 발전되었다면 반드시 최초 아이디어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타인의 저작물”이란 학술적 저작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든 미발표된 것이든 타인이 쓴 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사진, 영상 등을 말하는데, 예로서 전문 학술 서적,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기타 간행물에 발표된 논문, 학술회의 발표 논문인 프로시딩,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투고 중인 논문, 학회 구술 발표 자료, 강의 교재, 웹상에 올려놓은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됨.
- 표절 의심 논문에서 인용한 타인의 문단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해당 분야에 대한 고유한 생각 및 분석 내용임. 타인의 학술적 견해를 자신의 서론 부분에 활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출처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원저자의 저작물에서 하나의 문단(본 사안의 경우 3개의 문장으로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복제 표절(verbatim plagiarism; copying)에 해당함.
-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내용이 일반 지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25 「저작권법」(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음.

원저작물



타인이 작성한 논문(J. Electroanal. Chem. 880 (2021) 114851)

전기화학발광(electrogenerated chemiluminescence, ECL)은 전기 화학적으로 생성된 화학종들 사이의 높은 에너지 전자전달(electron transfer) 반응으로부터 발생하는 발광(luminescence) 현상이다. 전기 화학발광은 전극의 전위를 조절하여 생성시킬 수 있어 매우 낮은 바탕 신호와 함께 고감도, 넓은 검출 범위, 낮은 검출 한계, 우수한 시·공간적 조절 가능성, 시스템의 단순성, 초고속 검출 등의 현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이들 AuNCs들의 분자식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분석화학적 응용 가능성 또한 제시되지 못하였다. 분자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근적외선 발광체 AuNCs의 합성 및 특성 평가는 이들에 대한 생분석화학적 응용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AuNCs의 크기, 전하, 캡핑 리간드의 종류에 따른 ECL 메커니즘, 방출 파장 및 발광 효율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용액에서 작용하며 정확한 분자식을 갖는 근적외선 방출 AuNCs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생화학적 응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중략 -

부적절한 인용 예시



최근에는 수십에서 수백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금 나노클러스터(gold nanosclusters: AuNCs)가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생체 독성이 없으며, 핵심원자의개수와캡핑리간드(capping-ligand)의종류에따라AuNCs의 광학 및 전기화학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어 전기화학 발광체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1].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이들 AuNCs들의 분자식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분석화학적 응용 가능성 또한 제시되지 못하였다. 분자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근적외선 발광체 AuNCs의 합성 및 특성 평가는 이들에 대한 생분석화학적 응용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AuNCs의 크기, 전하, 캡핑 리간드의 종류에 따른 ECL 메커니즘, 방출 파장 및 발광 효율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용액에서 작용하며 정확한 분자식을 갖는 근적외선 방출 AuNCs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생화학적 응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에서 근적외선 방출을 할 수 있는 Au₂₅(SG)₁₈ NCs에 대해 그 합성법, 전기화학 및 ECL 특성, 그리고 분석화학적 응용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 요약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최근에는 수십에서 수백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금 나노클러스터(gold nanoclusters: AuNCs)가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생체 독성이 없으며, 핵심 원자의 개수와 캡핑 리간드(capping-ligand)의 종류에 따라 AuNCs의 광학 및 전기화학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어 전기화학 발광체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1]. 기존의 AuNCs들이 분자식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분석화학적 응용에 제한점이 존재하였으나 최근 Lee와 그 연구팀에서 정확한 분자식의 정보를 가진 수용성 근적외선 발광체 Au₂₂(glutathione)₁₈ NCs를 합성하여 그 전기화학 및 ECL 특성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AuNCs의 생분석화학적 응용 뿐만이 아니라 AuNCs의 크기, 전하, 캡핑 리간드의 종류에 따른 ECL 메커니즘, 방출 파장, 그리고 발광 효율의 상관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에서 근적외선 방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Au₂₅(SG)₁₈ NCs를 합성하여 그들의 전기화학 및 ECL 특성, 그리고 분석화학적 응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요약 -

참고 [1] R. Jin, Nanoscale, 2 (2010) 343-362.

문헌 [2] J. Kim, K. Pyo, D. Lee, W.-Y. Lee, J. Electroanal. Chem. 880 (2021) 114851.

표기 방법

이공계 논문의 경우 학술지별로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 이 예에서는 Elsevier에 출판되는 Journal of Electroanalytical Chemistry의 출처 표기 양식으로 표기함. 학술지들은 "Guide to Authors" 또는 "Introduction to Authors"에서 인용 방식과 참고문헌 작성방식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 그를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 참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7조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제3항

“연구자는 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 ㉠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만, 발췌·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

원문을 직접 보지 않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나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인용한 경우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부적절 인용 사례는 기 출판된 논문[J. Kim, H. Yi, D. Jeong W.-Y. Lee, Anal. Chem. 92 (2020) 114947]에서 첫 번째 문장 내용을 참고하였으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paraphrasing 표절”에 해당하고, 이후 문장의 경우는 기 출판된 타인의 논문[J. Kim, H. Yi, D. Jeong W.-Y. Lee, Anal. Chem. 92 (2020) 114947]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논문에 활용하면서 1차 논문에 대해서는 출처 표시를 하였으나 원래 1차 문헌(primary sources)을 요약 정리한 2차 문헌(secondary sources)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2차 문헌 표절”에 해당함.
- 1차 문헌들에 대한 출처를 밝혔으므로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타인의 글을 옮겨와 자신의 문서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
- 타인의 글을 소개할 때 출처만 표시하면 그 글을 문단 그대로 옮겨 (copy and paste) 써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표절에 해당됨.
- 타인의 글 전문을 소개하는 “전문 인용” 혹은 “직접 인용”은 원저자의 글의 뉘앙스를 살리면서 인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다소 사용되지만, 이·공학 및 의학 분야에서는 논문에서 원저자의 감정과 뉘앙스를 살려 글을 쓸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 인용이 활용되기는 어려움.
- 이공계 논문인 해당 사례는 학문 특성상 직접 인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에 대한 1차 문헌을 자신이 직접 읽은 후 본인의 표현으로 요약해 기술하여야 함.

원저작물



2차 저작물(J. Electroanal. Chem. 92 (2020) 114947)

루미놀 화학발광은 매우 잘 연구된 시스템이나 대부분의 경우 염기성 용액에서만 강한 빛을 방출하고 중성 수용액에서는 그 빛이 매우 약한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루미놀 화학발광을 생체분석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성 수용액에서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하는 새로운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cobalt(II) meso-tetratetraphenylporphyrine/CNT로 변형한 GC 전극 [4], 백금 나노입자로 수식한 산화주석 전극 [5], 그래핀으로 수식한 GC 전극 [6]에 기반한 루미놀 ECL 시스템이 중성 수용액에서 비교적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수식 전극들이 루미놀의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에 대한 촉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나노다공성 백금 전극(H1-ePt)의 경우 환원 루미놀 화학반응과 연관되어 있는 산소의 전기화학적 환원 반응에 매우 탁월한 전극 촉매효과가 있어 중성 수용액에서 매우 강한 루미놀 화학발광이 관찰되어 실제 분석화학적 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7].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루미놀 화학발광의 거동이 ECL 시스템에 사용된 전극의 물질과 표면 상태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하고 있다.

- 요약 -

- 참고 문헌 [1] T. A. Nieman, in Handbook of Instrumental Techniques in Chemical Analysis, F. Settle, Ed.,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1997, p.541.
- [2] W. R. Seitz, D. M. Hercules, Anal. Chem. 40 (1972) 2143-2149.
- [3] L. L. Klopff, T. A. Nieman, Anal. Chem. 55 (1983) 1080-1083.
- [4] Z Lin, J Chen, Y Chi, B Qui, G Chen, Electrochimica Acta 53 (2008) 6464-6468.
- [5] X. Chen, Z. Lin, X. M. Oyama, X. Wang, J. Nanosci. Nanotech. 9 (2009) 2413.
- [6] Y.-P. Dong, J. Zhang, W.-B. Zhang, J. Electrochem. Soc. 159 (2012) H692-H696.
- [7] J.H Han, J Jang, B.K. Kim, W.-Y. Lee, J. Electroanal. Chem. 660 (2011), 101-107.

부적절한 인용 예시



기존에 연구된 대부분의 루미놀 화학발광 시스템은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강한 빛을 방출하지만 중성 수용액에서는 그 빛이 매우 약한 단점을 보여주므로 루미놀 화학발광을 생체분석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성 수용액에서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하는 새로운 루미놀 화학발광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cobalt(II) meso-tetratetraphenylporphyrine/CNT로 변형한 GC 전극 [1], 백금 나노입자로 수식한 산화주석 전극 [2], 그래핀으로 수식한 GC 전극 [3]에 기반한 루미놀 ECL 시스템이 중성 수용액에서 비교적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수식 전극들이 루미놀의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에 대한 촉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나노다공성 백금 전극(H1-ePt)의 경우 환원 루미놀 화학반응과 연관되어 있는 산소의 전기화학적 환원 반응에 매우 탁월한 전극 촉매효과가 있어 중성 수용액에서 매우 강한 루미놀 화학발광이 관찰되어 실제 분석화학적 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루미놀 화학발광의 거동이 ECL 시스템에 사용된 전극의 물질과 표면 상태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전극 촉매 효과가 탁월한 금나노클러스터로 수식한 GC 전극에 기반하여 중성 수용액에서 작동 가능한 루미놀 ECL 갈락토스 바이오센서에 대해 그 제조법, 특성, 실제 혈액 분석에 응용하였다.

- 요약 -

참고 문헌 [1] Z Lin, J Chen, Y Chi, B Qui, G Chen, *Electrochimica Acta* 53 (2008) 6464-6468.

[2] X. Chen, Z. Lin, X. M. Oyama, X. Wang, J. Nanosci. Nanotech. 9 (2009) 2413.

[3] Y.-P. Dong, J. Zhang, W.-B. Zhang, J. Electrochem. Soc. 159 (2012) H692-H696.

[4] J.H Han, J Jang, B.K. Kim, W.-Y. Lee, J. Electroanal. Chem. 660 (2011), 101-107.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기존에 연구된 대부분의 루미놀 화학발광 시스템은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강한 빛을 방출하지만 중성 수용액에서는 그 빛이 매우 약한 단점을 보여주므로 루미놀 화학발광을 생체분석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성 수용액에서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하는 새로운 루미놀 화학발광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1].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에는 cobalt(II) meso-tetratetraphenylporphyrine/CNT [2], 백금 나노입자 [3], 그래핀 [4] 등의 나노구조물에 기반한 루미놀 ECL 시스템이 연구되었는데 나노 물질들의 우수한 전기화학적 촉매 효과로 인해 중성 수용액에서 비교적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특히 나노미터 크기 영역의 기공을 갖는 백금 전극(H1-ePt)이 분자산소(molecular oxygen)의 환원 반응에 대한 우수한 전극 촉매 효과로 인해 강한 루미놀 화학발광이 중성 수용액에서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루미놀 화학발광의 분석화학적 응용 가능성이 되었다[5]. 이러한 보고된 연구 결과들은 루미놀 화학발광의 거동 및 방출 세기가 ECL 시스템에 사용된 전극의 물질 종류 뿐만 아니라 그 표면의 미세 상태(microstate)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전극 촉매 효과가 탁월한 금 나노클러스터로 수식한 GC 전극에 기반하여 중성 수용액에서 작동 가능한 루미놀 ECL 갈락토스 바이오센서에 대해 그 제조법, 특성, 실제 혈액 분석에 응용하였다.

- 요약 -

참고 문헌 [1] J. Kim, H. Yi, D. Jeong W.-Y. Lee, J. Electroanal. Chem. 92 (2020) 114947.

[2] Z Lin, J Chen, Y Chi, B Qui, G Chen, Electrochimica Acta 53 (2008) 6464-6468.

[3] X. Chen, Z. Lin, X. M. Oyama, X. Wang, J. Nanosci. Nanotech. 9 (2009) 2413.

[4] Y.-P. Dong, J. Zhang, W.-B. Zhang, J. Electrochem. Soc. 159 (2012) H692-H696.

[5] J.H Han, J Jang, B.K. Kim, W.-Y. Lee, J. Electroanal. Chem. 660 (2011), 101-107.

“

**타인의 논문에 기술된 실험 방법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부적절한 인용 사례의 첫 번째 문장은 기 출판된 타인의 논문[M.M. Yusuf, H. Imai, H. Hirashima, J. Non-Cryst. Solids, 285 (2001) 90]에 소개된 실험 방법에 기초하였으나, 원 논문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자기가 최초로 제2 방법을 만들어낸 것인 양 작성한 것이므로 “아이디어 표절”에 해당할 수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타인이 개발한 물질 제조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 하였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해당 논문을 읽는 독자들은 해당 물질 제조법을 논문을 작성한 저자가 최초로 개발한 방법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하는 기만행위를 한 것이므로 표절에 해당함.
- 또한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쓰거나 요약 또는 말바꿔 쓰기를 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타인의 연구 논문에 기술된 방법론을 차용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차용한 방법론을 제시한 원 논문에 대해 출처표시를 하여야 하고, 연구 주제가 다른 분야의 논문이라도 원 논문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 논문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인용 하여야 함.
- 또한 원저작물의 핵심 내용에 의존하여 자신의 저술을 하는데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문맥을 바꾼다고 해도 표절에 해당함. 학술 연구 활동에서 직접인용이 아닌 간접인용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용어(표현 방식)로 다시 말바꿔쓰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되므로, 연구자는 타인의 문장을 요약 또는 재배치하거나, 용어를 변경할 경우에도 출처를 표시해야 함.
- 이공계 분야 연구 논문에서 과거에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물질 혹은 실험 대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새롭게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Experimental Section” 혹은 “Methods Section”에서는 자신의 이전 문장뿐 아니라 연구방법에 대해 동일하게 문장을 작성하더라도 자기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근래 편집인들의 공통된 의견임.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이전 논문에 대해 적절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원저작물



타인의 논문(J. Non-Cryst. Solids, 285 (2001) 90)

2.1. Preparation of TiO_2 Films

TiO_2 films were prepared from $\text{Ti}(\text{OC}_4\text{H}_9)_4$, (99.9%, Soekawa Rikagaku, Tokyo) by hydrolysis in alcoholic solution and spin-coating. Ethanol (99.5%, Junsei Chemical, Japan) was used as solvent. The concentration of $\text{Ti}(\text{OC}_4\text{H}_9)_4$ was 0.15 mol l^{-1} . The amount of ion-free H_2O used for hydrolysis was about five times the theoretical amount. 0.17 mol HCl was added to $1 \text{ mol Ti}(\text{OC}_4\text{H}_9)_4$ as a catalyst. The solution was vigorously stirred for 1 h at room temperature. The precursor solutions were transparent and were very stable in air. Silica glass plates (Matsunami Glass) were used as the substrates. TiO_2 coatings were prepared by spin-coating at 2500 rpm for 30s. Spinning was repeated (one after one, without heating between coating) up to five times.

부적절한 인용 예시



2. 실험 및 방법

2.1. ECL 센서의 제조

TiO_2 졸(sol)은 propan-2-ol에 녹인 $0.15 \text{ M Ti}(\text{OC}_4\text{H}_9)_4$ (99.9%, Sigma-Aldrich,) 5 mL 초순수 증류수(deionized water)와 혼합한 후 상기 혼합 용액에 0.1 M HCl 용액 약 1 mL를 촉매로 첨가하여 결과적인 졸이 상온에서 투명해 얻어질 때까지 강하게 교반하여 제조하였다. 나피온(Nafion)과 TiO_2 졸의 부피비는 25% 에서 80% (v/v, %) 사이로 조절되었는데 이때 $\text{Ti}(\text{OC}_4\text{H}_9)_4$ 는 모두 TiO_2 졸로 변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 복합체 약 0.02 mL를 분취하여 유리막 전극 표면 위에 얇은 막을 형성시켰다.

- 종략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2. 실험 및 방법

2.1. ECL 센서의 제조

TiO₂ 졸(sol)은 propan-2-ol에 녹인 0.15 M Ti(OC₄H₉)₄을 5 mL 초순수 증류수(deionized water)와 혼합하여 이전에 발표된 논문[27]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0.1 M HCl 용액 약 1 mL를 위의 용액에 촉매로 첨가한 후 결과적인 졸이 상온에서 투명해 얻어질 때까지 강하게 교반하였다. 나피온(Nafion)과 TiO₂ 졸의 부피비는 25% 에서 80% (v/v, %) 사이로 조절되었는데 이때 Ti(OC₄H₉)₄는 모두 TiO₂ 졸로 변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 복합체 약 0.02 mL를 분취하여 유리막 전극 표면 위에 얇은 막을 형성시켰다.

- 요약 -

참고 문헌 [27] M.M. Yusuf, H. Imai, H. Hirashima, J. Non-Cryst. Solids, 285 (2001) 90.

“

타인의 논문에 출판된 그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누락한 경우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타인이 출판한 논문에 사용된 그림(figure)을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원 논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함.
- 해당 사례의 경우 polyethylene glycol (PEG)/polyanion을 활용하여 효소를 고정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한 원 논문에 사용된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표절에 해당됨. 자신의 논문에 polyethylene glycol (PEG)/polyanion을 활용하여 효소를 고정한 모식도가 해당 논문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 논문의 출처를 밝히고 해당 그림을 사용할 수 있음.
- 참고 논문에 제시된 모식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해당 그림을 그대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림의 저작권이 해당 논문을 출판한 출판사에 있으므로 그 그림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상적인 그림이 아니어서 그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허가(copy right permission)를 받은 후에 활용하여야 함.
- 원자료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Request for permission to reproduce published material’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출판사 또는 학술지 편집자에게 보내어 허가를 받아야 함. 학술지에서는 저자의 허가도 받으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이는 원저자의 지적 노력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의미 있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음.²⁶⁾

26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p.26-27.

부적절한 인용 예시



Sharma 등은 갈락토스 산화효소(galactose oxidase: GalOx)를 poly-3-hexyl thiophene와 stearic acid와 함께 indium tin-oxide (ITO) 기판위에 Langmuir-Bloggett (LB) 박막 제조법을 활용하여 고정한 전류법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우유 속에 존재하는 갈락토스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22]. 이러한 바이오센서 디자인은 바이오센서의 보존 기간을 90일까지 연장시킬 수 있었으며, 더욱이 바이오센서의 감응 시간(response time)이 5.6-22.2 mM 농도 범위에서 60초로 매우 우수하였다.

- 중략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응 시간과 검출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GalOx 효소를 polyethylene glycol (PEG)과 polyanion을 이용하여 유리질 탄소 (glassy carbon: GC) 전극위에 고정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의 특성을 분석하고 실제 인간의 혈액시료 분석에 응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polyethylene glycol (PEG)/polyanion 모식도는 아래와 같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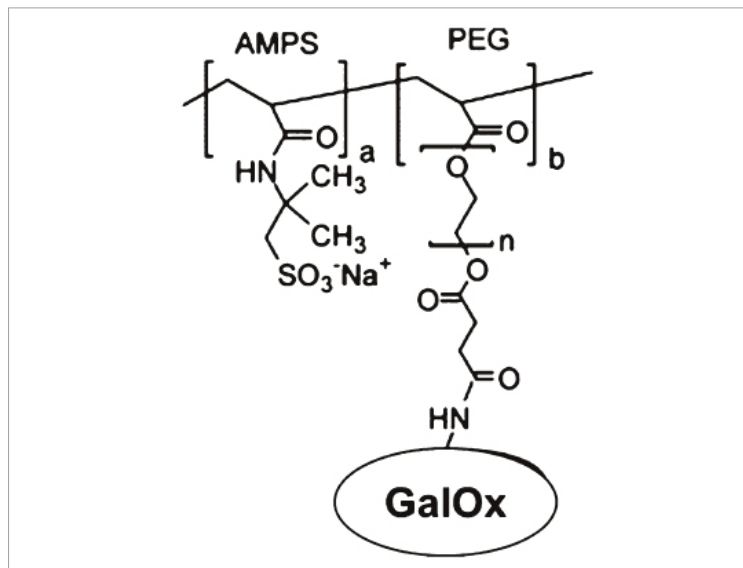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GalOx immobilization on GC electrode surface.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Sharma 등은 갈락토스 산화효소(galactose oxidase: GalOx)를 poly-3-hexylthiophene와 stearic acid와 함께 indium tin-oxide (ITO) 기판위에 Langmuir-Blodgett (LB) 박막 제조법을 활용하여 고정한 전류법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우유 속에 존재하는 갈락토스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22]. 이러한 바이오센서 디자인은 바이오센서의 보존 기간을 90일까지 연장시킬 수 있었으며, 더욱이 바이오센서의 감응 시간(response time)이 5.6-22.2 mM 농도 범위에서 60초로 매우 우수하였다.

- 중략 -

이에 본 연구에서는 Sung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형광 바이오센서에서 GalOx 효소를 polyethylene glycol (PEG)과 polyanion을 이용하여 광섬유 표면에 고정한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GalOx 효소를 유리질 탄소(glassy carbon: GC) 전극위에 고정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를 제작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실제 인간의 혈액시료 분석에 응용하고자 한다 [25].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polyethylene glycol (PEG)/polyanion 모식도는 아래와 같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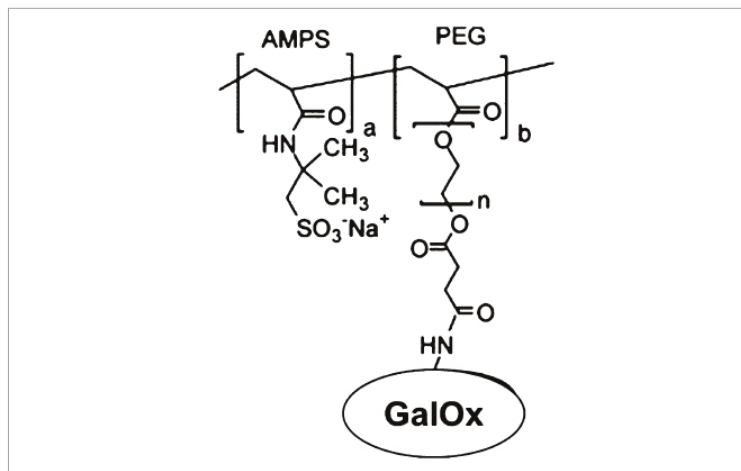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GalOx immobilization on GC electrode surface (Reprinted from [25]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참고 문헌 [25] W.J. Sung, Y.H. Bae, Sensors Actuators B Chem. 114 (2006) 164-169.

✓ 참조

이공계 분야에서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 전망을 소개하는 리뷰(review)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소개할 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인의 논문에 출판된 그림, 표(table), 그래프(graph) 등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 설명하면서 해당 연구를 소개하면 가독성이 높아져 보다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을 할 수 있음. 반드시 원저자 및 해당 출판사에 해당 데이터 사용에 관한 저작권 허가를 받은 후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자신과 타인이 공동으로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자신의 학위 논문으로 발표할 때 출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해당 사례는 자신과 타인이 공동으로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하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한 타인의 학술적 기여 부분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임.
- 최근 이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학위 과정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학위 논문으로 작성할 때,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 논문의 한 저자인 박사학위 과정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 할 수 있음.²⁷⁾ 만약 학위논문에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나 텍스트를 조금이라도 활용한다면, 당사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적절하게 인용표시를 해야 함.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문사회, 이·공학 및 의학분야의 경우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은 unpublished master's thesis 혹은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으로 명기되어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학위 논문을 하나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중 업적 인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 논문임을 밝히도록 하고 있음.
- 대학에 따라서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동료 심사제도가 있는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학위 수여의 조건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 학위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이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조차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
- 그러나 인문·사회 분야 중 일부 분야에서는 학위 논문을 정식으로 발표한 논문으로 간주하여 이를 다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중복게재로 판정하기도 함.

27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7.

- 또한 학위 논문을 다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이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분야도 있음.
- 학위 논문의 중복게재 여부는 해당 분야의 학문적 관행과 규정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함.

부적절한 인용 예시



2. 실험 및 방법

2.1. 금나노클러스터의 제조

글루타치온[SG]으로 안정화된 Au22 금나노클러스터(AuNCs) [Au22(SG)18], 글루타치온으로 안정화된 Au25 NCs [Au25(SG)18], 그리고 (3-mercaptopropyl) sulfonate (MPS)로 안정화된 Au25 NCs [Au25(MPS)18]는 이전에 출판된 여러 연구진들의 합성법에 기반하여 제조하였다 [32-34]. 소혈청 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으로 안정화된 AuNCs [Au@BSA]는 이전에 개발한 제조 방법으로 합성하였다[35].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2. 실험 및 방법

2.1. 금나노클러스터의 제조

글루타치온[SG]으로 안정화된 Au22 금나노클러스터(AuNCs) [Au22(SG)18], 글루타치온으로 안정화된 Au25 NCs [Au25(SG)18], 그리고 (3-mercaptopropyl) sulfonate (MPS)로 안정화된 Au25 NCs [Au25(MPS)18]는 이전에 출판된 여러 연구진들의 합성법을 수정하여 제조하였다 [32-34]. 소혈청 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으로 안정화된 AuNCs [Au@BSA]는 이전에 개발한 제조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35].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글루타치온으로 안정화된 금나노클러스터(AuNCs)들의 합성과 분석은 한국대학교 화학과 나노화학 연구실 표철수 학생에 의해 수행되었다.

- 종략 -

■ 참고 문헌 [1] 본 논문의 제3장 연구 내용은 이전에 출판된 아래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음. [J. Kim, K. Pyo, D. Lee, W. -Y Lee, Near-infrared electrogenerated chemiluminescence of Au₂₂(glutathione)₁₈ nanoclusters in aqueous solution and its analytical application, J. Electroanal. Chem. 880 (2021) 114851.]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나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해당 사례는 연구자가 타인이 쓴 영문 논문의 한 어절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 표절의 유형 중 하나임.
- 연구자는 타인이 외국어로 쓴 저작물을 그대로 번역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번역한 후 말바꿔쓰기와 요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도 있으나, 활용한 것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고유한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 아무리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해도 반드시 원전의 출처를 표기해야 함.
- 일반적으로 외국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경우는 직접인용 방식처럼 인용부호(“ ”)를 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번역한 후 이를 다시 말바꿔쓰거나 요약을 한 경우는 간접 인용의 방식처럼 인용부호 없이 출처표기를 해야 함.
- 외국어로 된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원전의 출처를 밝혀주어야 하며, 원문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지 말고 핵심 사항만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저작물



타인의 논문(Microchim Acta 184 (2017) 3663-3671)

This review has highlighted some of the novel approaches that have been employed for fabricating amperometric galactose biosensors. The analytic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se galactose biosensors are summarized in Table 1.

The use of GalOx offers an additional advantage over galactose dehydrogenase (GADH), as the latter requires cofactors to be co-immobilized onto the underlying transducer. In addition to this, the response times are generally shorter for GalOx based biosensors. Consequently, only one paper reported the use of GADH in its

design. However, there are several drawbacks associated with the use of GalOx-based biosensors. Significantly higher applied potentials must be used in order to generate an electrochemical response from the enzyme generated H_2O_2 .

부적절한 인용 예시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 나노구조체인 그래핀에 기반한 고감도 전류법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인간의 혈액 분석에 활용하였다. 갈락토스 바이오센서 제작에서 산화효소(galactose oxidase, GalOx)를 사용하는 것은 갈락토스 탈수소효소(galactose dehydrogenase, GADH)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장점이 있는데, 이는 GADH 기반 바이오센서의 경우는 변환기 상부에 조효소(cofactor)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GalOx 기반한 바이오센서의 감응 시간이 GADH 기반 바이오센서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더 빠르다. GalOx 기반한 바이오센서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효소 반응을 통해 생성된 H_2O_2 로부터 전기화학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높은 전압을 가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GalOx효소를 탄소나노구조체인 그래핀과 sol-gel titania-Nafion 복합막에 포함시켜 백금 나노입자를 고정된 GC 전극에 고정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래핀과 백금 나노입자가 효소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의 산화반응에 대해 전극 촉매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titania-Nafion 복합막이 나노나공성 구조를 가져 물질의 이동이 매우 빨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는 2초 이내의 빠른 감응속도와 $40.6 \text{ mAM}^{-1}\text{cm}^{-2}$ 의 매우 높은 감도, 그리고 $3.78 \times 10^{-6} \text{ M}$ (S/N=3)의 매우 낮은 검출한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생체친화적인 titania-Nafion 복합막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의 장기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 나노구조체인 그래핀에 기반한 고감도 전류법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인간의 혈액 분석에 활용하였다. 산화효소 (galactose oxidase, GalOx)에 기반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는 갈락토스 탈수소효소(galactose dehydrogenase, GADH)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변환기 상부에 조효소(cofactor)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이 간편하고 감응속도가 빠르지만 효소 반응을 통해 생성된 H_2O_2 로부터 전기화학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높은 전압을 가해야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GalOx효소를 탄소나노구조체인 그래핀과 sol-gel titania-Nafion 복합막에 포함시켜 백금 나노입자를 고정한 GC 전극에 고정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래핀과 백금 나노입자가 효소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의 산화반응에 대해 전극 촉매효과가 매우 클 뿐만이 아니라 titania-Nafion 복합막이 나노나공성 구조를 가져 물질의 이동이 매우 빨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락토스 바이오 센서는 2초 이내의 빠른 감응속도와 $40.6 \text{ mAM}^{-1}\text{cm}^{-2}$ 의 매우 높은 감도, 그리고 $3.78 \times 10^{-6} \text{ M}$ (S/N=3)의 매우 낮은 검출한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생체친화적인 titania-Nafion 복합막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의 장기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 요약 -

참고 문헌 [1] P. Kanyong, F. D. Krampa, Y. Aniweh, G. A. Awandare, Microchim Acta 184 (2017) 3663-3671.

3.3. 연구보고서

“

근거가 되는 자료의 인용을 누락한 경우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세종시의 개관을 설명하고 있음. 부적절한 인용 예시에서는 세종시의 일반 현황을 소개하면서 인구 37만 명, 성장률 300%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한 출처표기가 없어 부적절한 인용표기 사례로 제시되었음.
- 인구 규모, GDP, GRDP 등의 자료를 제시할 때 출처표기에 유의해야 함. 보고 쓴 내용이라면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하며, 기억에 의존한 수치를 기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 출처를 표기해야 함.
- 온라인 자료는 갱신, 삭제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저장에 되는 아카이브가 아닌 이상 검색일을 밝히는 것이 좋음. APA 7판에서는 온라인 자료가 아카이브되어 있다면 검색일은 필요하지 않으나, 아카이브 버전에 대한 링크가 영구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입력자료 URL과 검색일을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음(APA, 2020:455,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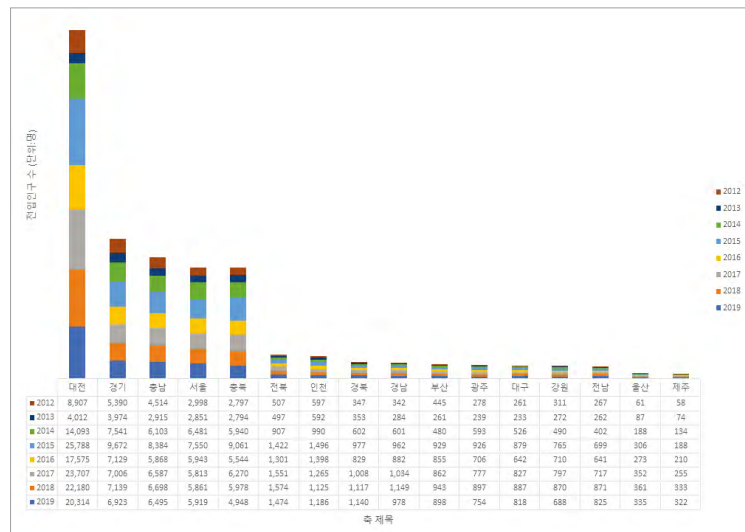
부적절한 인용 예시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출범 10년이 되는 2022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세종시의 현재를 분석해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2년 7월 1일, 인구 약 11만명으로 출범한 도시이다. 2021년 12월 현재 세종시 인구는 약 37만으로 300%이상의 인구 성장을 이룩한 도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 세종이 발전해 온 모습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제정 20. 11. 29.)이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등이 확정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은 시로 규정되었고,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세종시는 기존 농촌 지역이었던 곳에 새롭게 출범된 도시로, 행복도시 젊은 층의 인구는 타 도시에서 진입한 인구가 90%이상으로, 주로 대전과 수도권에서 이주하여 왔다.

주민등록전입지별 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세종시로 유입된 전 주거지는 대전, 경기, 충남, 서울, 충북 순이었다. 또한, 해당기간 유입인구의 합계를 통해 살펴보면 유입인구 총 385,189명 중 84.5%인 325,662명이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의 연도별 유입지역 현황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각 연도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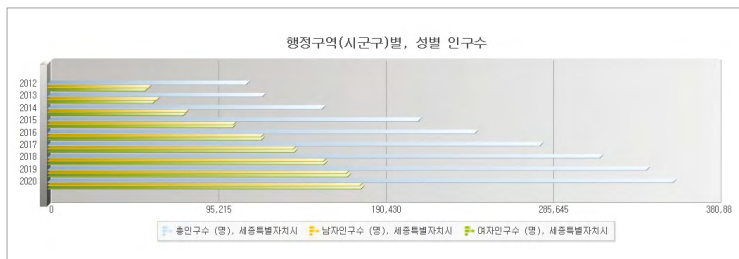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출범 10년이 되는 2022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세종시의 현재를 분석해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2년 7월 1일, 인구 약 11만명으로 출범한 도시이다(행정안전부, 2012~2021). 2021년 12월 현재 세종시 인구는 약 37만으로 300%이상의 인구 성장을 이룩한 도시이다(그림1).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 세종이 발전해 온 모습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제정 20. 11. 29.)이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등이 확정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은 시로 규정되었고,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세종시는 기존 농촌 지역이었던 곳에 새롭게 출범된 도시로, 행복도시 젊은 층의 인구는 타 도시에서 진입한 인구가 90%이상으로, 주로 대전과 수도권에서 이주하여 왔다.

세종시 기본통계 주민등록전입지별 인구이동 현황(세종특별자치시, 2012~2020)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세종시로 유입된 전 주거지는 대전, 경기, 충남, 서울, 충북 순이었다. 또한, 해당기간 유입인구의 합계를 통해 살펴보면 유입인구 총 385,189명 중 84.5%인 325,662명이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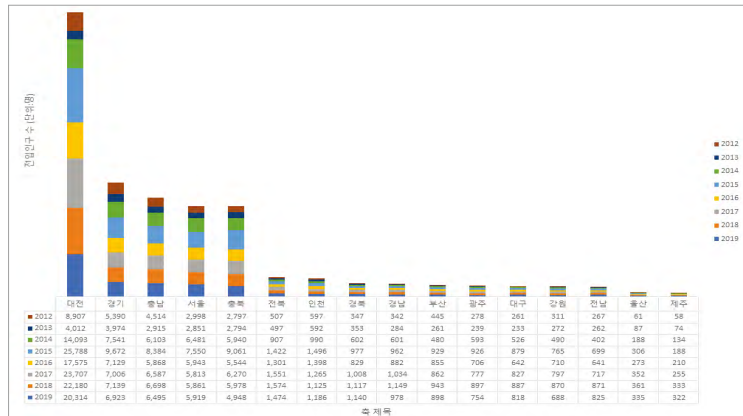


〈그림1〉 세종시 주민등록인구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21. 12. 6. 갱신),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20,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12

(접속일: 2021. 12. 12.)



〈그림2〉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의 연도별 유입지역 현황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20) 세종특별자치시 기본통계, 주민등록전입지별 인구이동(세종←타시도), 2012~2020,
<https://www.sejong.go.kr/stat/stats/form.do?key=1910168795224#none>
 (접속일: 2021. 12. 12.)

참고 문헌 행정안전부(2021. 12. 6. 갱신)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20,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l2
 (접속일: 2021. 12. 12.)

세종특별자치시(2020) 「세종특별자치시 기본통계, 주민등록전입지별 인구이동(세종←타시도), 2012~2020,
<https://www.sejong.go.kr/stat/stats/form.do?key=1910168795224#none>
 (접속일: 2021. 12. 12.)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2012~2021). (행정안전부, 2012~2021).	행정안전부, 2021. 12. 6. 갱신,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20, KOSIS.	행정안전부(2021. 12. 6. 갱신)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20,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l2 (접속일: 2021. 12. 12.)
세종특별자치시 (2012~2020) (세종특별자치시, 2012~202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기본통계」, 주민등록전입지별 인구이동 (세종←타시도), 2012~2020,	세종특별자치시(2020) 「세종특별자치시 기본통계」, 주민등록전입지 별 인구이동(세종←타시도), 2012~2020, https://www.sejong.go.kr/stat/stats/form.do?key=1910168795224#none (접속일: 2021. 12. 12.)



연구보고서 인용 시 세부 사항을 누락한 경우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회색문헌의 정의 및 관련 연구 동향을 설명하는 자료임.
- 파란색 문장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의 문헌을 인용하고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인용한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고 제시하였음. 특정 페이지를 인용한 경우 페이지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록색 문장은 조현양(2008)의 논문 일부 페이지의 내용을 간접인용한 부분으로, 저널의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면 페이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논문 일부 내용을 간접인용한 경우는 페이지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라색 문장은 국내외에서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잘 알려진 위키디피아와 국내에서 잘 알려진 나무 위키에서 검색한 내용을 인용한 사례임. 위키피디아 등의 온라인 백과사전은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2차 문헌이기 때문에 검색 내용을 연구논문 등에 사용하기 전에 인용자료로서 내용이 적절한지, 혹시 보다 신뢰할만한 1차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책임자와 충분히 상의해야 함.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2차 자료보다는 1차 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임.²⁸⁾ 위키피디아 등의 온라인 백과사전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APA 양식은 “제목(검색항목)”, 작성 연월일, 위키피디아, URL 순으로 표기함.
- 참고로 위키피디아(위키백과)에서는 “이 문서 인용하기”를 제공하여 APA 양식, MLA 양식, MHRA 양식, 시카고 양식, CBE/CSE 양식, 블루북 양식, BibTeX 기록 등 7가지 인용표기 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²⁸⁾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2) Wikipedia entry references,
<https://apastyle.apa.org/style-grammar-guidelines/references/examples/wikipedia-references>
(접속일: 2021. 12. 18.)

〈 APA 양식 〉

양식	내용주	참고문헌
제목.(연월일), 위키백과. URL Article title. (Year, Month Day). In Wikipedia. URL	"Korea" (2021) ("Korea," 2021)	Korea(12 December 2021).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Special:CiteThisPage&page=Korea&id=1060005868&wpFormIdentifier=titleform

〈 MLA 양식 〉

양식	내용주	참고문헌
제목.(연월일), 위키백과. URL. 발행처. 최근 수정일.URL "Article Title." Wikipedia, Wikimedia Foundation, date of last modification, URL.	"Korea"	"Korea." Wikipedia, Wikimedia Foundation, 12 December 2021,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Special:CiteThisPage&page=Korea&id=1060005868&wpFormIdentifier=titleform

〈 시카고 양식 〉

양식	내용주	참고문헌
발행처. 연도. 제목. 최근 수정일. URL Wikipedia. Year. "Article Title." Last modified Date. URL.	Wikipedia(2021) (Wikipedia 2021)	Wikipedia. 2019. "Korea." Last modified 12 December 2021.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Special:CiteThisPage&page=Korea&id=1060005868&wpFormIdentifier=titleform

- 단어는 KISTI의 김미진·배순자·남영준이 연구한 보고서를 인용한 사례임. 본 사례의 경우 KISTI(2002) 보다는 김미진 외(2002) 또는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보고서를 인용할 때 저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저자명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임.
- 웹사이트상의 웹페이지 이용 시, 저자명과 사이트명이 같은 경우, 사이트명을 생략함(APA, 2020:497)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2) Wikipedia entry references,
<https://apastyle.apa.org/style-grammar-guidelines/references/examples/wikipedia-references>
(접속일: 2021. 12. 18.)

부적절한 인용 예시



회색문헌(Gray literature)이란?

보고서에는 정부정책보고서, 기술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많은 종류의 보고서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학술논문과 대조되는데, 학술논문은 동료 연구자에의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보고서는 동료 연구자로 부터의 평가가 필수적이지는 않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학술논문 등은 논문에 대한 특정 형식, 심사규정을 준수하고 동료 연구자로부터의 동료평가를 받는 반면에 보고서는 학술지가 준수해야 하는 형식이나 심사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출간과 배포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진다(조현양, 2008).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고 수정되고 있는 백과사전 플랫폼 나무위키와 위키피디아에서는 “회색 문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회색 문헌”은 일반적으로 발행은 되었지만 정식으로 출판되어 시판되는 것이 아닌 문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접근과 열람, 입수에 어려움이 있어 비공식 유통 자료라고도 칭한다. 이는 대외비 자료(black literature)와 백색문헌(white paper)의 사이에 위치한다. 대표적로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발행된 보고서, 프로시딩, 기술보고서 등을 이 카테고리에 위치시킬 수 있다. 다만, 각 국가에서 바라보는 “회색 문헌”의 의미는 약간씩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색 문헌(Gray literature)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문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용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 중략 -

2000년대 온라인 자료의 활용이 급속히 증가되고, 회색문헌의 활용이 증가되면서, 회색문헌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었다. KISTI(2002)은 국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회색문헌을 효과적으로 수집·처리·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현양(2008)은 연구자들이 회색문헌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발간한 학술지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회색문헌의 선호도 살펴봄으로써 학문간 회색문헌에 대한 인용 차이를 밝혀내었다. 이지연(2007)은 연구개발활동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리가 어려운 회색문헌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사례, 국내 관련자 실무 면담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회색문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고 문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doi.org/10.1037/0000165-000>

이지연(2007) 국내 과학기술분야 회색문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8(2), 25-57.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 국내외 회색문헌의 수집, 처리 및 서비스 체제 구축 연구. KISTI. 연구보고서

조현양(2008) 인용 분석을 통한 학문간 회색문헌의 활용도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73-294.

참고 사이트 회색문헌(2021.6.24.) 위키피디아, Wikipedia.<https://ko.wikipedia.org/wiki/%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회색문헌(2021. 9. 22.)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회색문헌(Gray literature)이란?

보고서에는 정부정책보고서, 기술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많은 종류의 보고서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학술논문과 대조되는데, 학술논문은 동료 연구자에의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보고서는 동료 연구자로 부터의 평가가 필수적이지는 않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329). 학술논문 등의 논문에 대한 특정 형식, 심사규정을 준수하고 동료 연구자로부터의 동료평가를 받는 반면에 보고서¹⁾는 학술지가 준수해야 하는 형식이나 심사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출간과 배포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진 (조현양, 2008:274). 이런 종류의 자료를 문헌정보학에서는 “회색 문헌(Gray literature)”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색문헌에 대한 범위는 이를 정의하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회색 문헌”은 일반적으로 발행은 되었지만 정식으로 출판되어 시판되는 것이 아닌 문헌으로 정의하고 있다²⁾.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접근과 열람, 입수에 어려움이 있어 비공식 유통 자료라고도 칭한다³⁾.

이는 대외비 자료(black literature)와 백색문헌(white paper)의 사이에 위치한다. 대표적로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발행된 보고서, 프로시딩, 기술보고서 등을 이 카테고리에 위치시킬 수 있다. 다만, 각 국가에서 바라 보는 “회색 문헌”의 의미는 약간씩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색 문헌(Gray literature)을 사용에는 다음과 같이 문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용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 중략 -

2000년대 온라인 자료의 활용이 급속히 증가되고, 회색문헌의 활용이 증가되면서, 회색문헌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었다.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은 국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회색문헌을 효과적으로 수집·처리·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현양(2008)은 연구자들이 회색문헌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발간한 학술지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회색문헌의 선호도 살펴봄으로써 학문간 회색문헌에 대한 인용 차이를 밝혀내었다. 이지연(2007)은 연구개발활동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리가 어려운 회색문헌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사례, 국내 관련자 실무 면담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회색문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각주** 1) 조현양(2008)은 보고서 대신 회색문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본 글에서는 내용의 흐름상 보고서로 사용하였다.
2) “회색문헌”(2021. 6. 24.) Wikipedia
3) “회색문헌”(2021. 9. 22.) 나무위키

- **참고 문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doi.org/10.1037/0000165-000>
이지연(2007) 국내 과학기술분야 회색문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8(2), 25-57.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 국내외 회색문헌의 수집, 처리 및 서비스 체제 구축 연구. KISTI. 연구보고서
조현양(2008) 인용 분석을 통한 학문간 회색문헌의 활용도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73-294.

참고 사이트 회색문헌(2021. 6. 24.) 위키피디아,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회색문헌(2021. 9. 22.)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회색문헌” (2021) (“회색문헌”, 2021)	회색문헌 (2021. 6. 24.) 위키피디아,	회색문헌(2021. 6. 24.) 위키피디아,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회색문헌” (2021) (“회색문헌”, 2021)	회색문헌 (2021. 9. 22.) 나무위키	회색문헌(2021. 9. 22.)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A%8C%EC%83%89%EB%AC%B8%ED%97%8C (접속일: 2021. 12. 14.)
이지연(2007) (이지연, 2007)	이지연(2007)	이지연(2007). 국내 과학기술분야 회색 문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8(2), 25-57.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0)	김미진·배순자· 남영준(2002)	김미진·배순자·남영준(2002). 국내외 회색문헌의 수집, 처리 및 서비 스 체계 구축 연구. KISTI. 연구보고서
조현양(2008) (조현양, 2008)	조현양(2008)	조현양(2008). 인용 분석을 통한 학문간 회색문헌의 활용도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73-29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doi.org/10.1037/0000165-000



보도자료 활용 시 상세 정보를 누락한 경우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정부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임.
-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는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보도자료는 이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임. 정부부처 보도자료에는 보도제목, 보도일시, 배포일시가 제시되어 있음. 부처 보도자료를 활용할 경우, 제목, 부처명, 보도일시를 함께 출처표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보도자료 URL과 보도자료를 확인한 접속일자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접속일 표기 없이 해당정보의 위치(URL)만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는 해당 URL이 정보 수정 또는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임.
- 각주 또는 미주와 참고문헌에 서지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각주/미주 또는 참고문헌 중에서 둘 중 한 곳에 정확한 정보를 모두 표기하는 것이 좋음. 보통 각주/미주에는 간략한 정보를 작성하고, 참고문헌에는 정확한 모든 정보를 작성함.
- 시카고 양식에서는 보도자료 등은 각주/미주에만 인용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참조

- 우리가 매일 접하는 방송뉴스나 신문기사, 보도된 사진자료 등을 인용할 때 저작권에 유의해야 함. 뉴스기사는 언론사의 창작물이며 저작권이 적용된다. 신문, 인터넷 등에 텍스트로 보도된 뉴스는 어문저작물이며, 방송뉴스 등에서 기자가 보도한 뉴스는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 저작물임. 방송, 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도한 뉴스는 영상 저작물,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등은 음악저작물, 언론사 기자가 촬영하여 보도한 사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여 법의 보호를 받음(한국언론진흥재단, 2020:9).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온라인, SNS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용에 해당함. 비영리, 공익 목적일지라도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함. 다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서 벗어남(저작권법 제7조).

• 저작권법 제2장 제4절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음의 목적인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가하고 있음.

첫째, 재판 또는 수사,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를 위한 복제(제23조)

둘째,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제24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장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단, 국가안전보장 정보를 포함하거나, 개인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불가) (제24조2)

넷째, 학교교육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제25조)

다섯째,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의 경우(제26조)와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제27조)

여섯째,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정당한 관행으로 인용하는 경우(제28조)

일곱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일곱째,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제30조)

부적절한 인용 예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는 2021년도 6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된다**(표 1). 이러한 기준은 1인 가구와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에겐은 약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조정한 것이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만원 이하이거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8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된다. 혼합 가구의 경우는 26만원까지 가능하다. 가구내 소득원이 2인인 맞벌이 3인 가구는 4인 기준을 적용한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9억 초과,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을 보유한 경우에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1]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기획재정부, 2021. 8. 30)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는 2021년도 6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된다(표1). 이러한 기준은 1인 가구와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에게는 약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조정한 것이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만원 이하이거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8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된다. 혼합가구의 경우는 26만원까지 가능하다. 가구내 소득원이 2인인 맞벌이 3인 가구는 4인 기준을 적용한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

라도 고액의 자산(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을 보유한 경우에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¹⁾

〈표1〉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8. 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 **각주** 1) 기획재정부(2021. 8. 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보도자료]

■ **참고 문헌** 기획재정부(2021. 8. 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보도자료]https://www.moef.go.kr/nw/nw/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56396&menuNo=4010100
(접속일: 2021. 9. 6.)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21) (기획재정부, 2021)	기획재정부 (2021.8.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보도자료]	기획재정부(2021. 8. 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w/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6396&menuNo=4010100 (접속일: 2021. 9. 6.)

올바른 인용표기 위한 길잡이

온라인 자료의 인용정보를 기록할 때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함. 본 사례집의 온라인 자료 인용방법은 현재 시점에서 권고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인용방식은 참고자료로 사용함이 바람직함.

온라인 자료에 대한 출처 인용표기에 대한 부분은 영구적인 저장에 되는 URL이 아닌 이상 검색일을 기록해야 함. APA 7판에서는 온라인 자료가 아카이브 되어 있다면 검색일은 필요하지 않으나, 아카이브 버전에 대한 링크가 영구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입력자료 URL과 검색일을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음(APA, 2020:455, 461).

04

온라인 자료 활용 사례

- 4.1 영상자료와 이미지
- 4.2 웹페이지와 블로그
- 4.3 데이터 및 기타 자료

04 온라인 자료 활용 사례

4.1. 영상자료와 이미지

“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 인용 사례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를 사용할 때는 다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는 타인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구성 또는 사실을 재구성한 창작물임. 따라서 강의 자료의 사진을 일부 캡처하거나 저장해서 온라인 강의 자료(강의 슬라이드)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²⁹⁾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용 전에 저작권 법상 제한을 꼭 확인하고 저작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허락을 받은 후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튜브 동영상 자료 또는 온라인 강의 자료의 일부를 인용할 때는 저자명(기관명), 게시일, 제목, 접속일, URL, 파일형식(Viedo 등)을 함께 기록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영상 클립을 캡처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좋음.
- 혹시 활용한 자료가 2차 문헌이라면 가급적 1차 문헌을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하며, 2차 문헌만 활용하였다면 1차 문헌과 2차 문헌의 출처를 함께 표기해야 함.
-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 때, 그 범위가 저작권법 제28조 안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29 KIPACAFE(2020. 6. 24.작성) 온라인 강의, 저작권 주의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pracafe/222011119542>
(접속일: 2021. 10. 12)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인지의 판단은 이른바 ‘불확정 개념’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제시하는 “주종관계”라는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 사이의 주종관계”의 문제로 파악하여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보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사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34).

- 공표된 온라인 영상물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여기에 부연, 예시, 설명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라고 볼 수 있으나, 자기개발서의 일부를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주종 관계가 역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이 필요함(오승중, 2020:189).

부적절한 인용 예시



리더와 조직원들과의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리더는 소통을 통해 비전과 조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지금은 소통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필요한 시대이다(KIRD, 2021). KIRD(2021)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공감적 경청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말하기 방법 즉 전달방법과 전달과정에서 편안함을 주는 제스처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특히 경청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줄리안 트레저의 5가지 잘 듣는 방법 중 RASA를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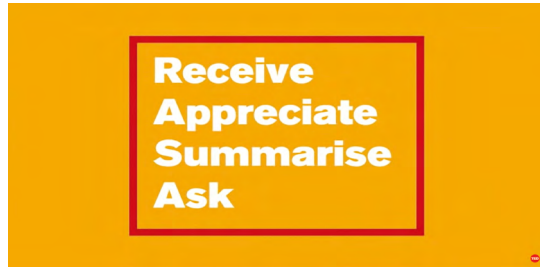


〈그림1〉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출처: youtube(2021)

Julian Treasure(2011)은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5 ways to listen better)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침묵(Silence)이다. 다시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루 3분 정도 침묵을 연습한다. 둘째는 믹서(Mixer)이다. 여러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소리를 구별해 내는 것을 연습한다.

셋째는 일상소리 즐기기(Savoring)이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일상적인 소리를 즐겨보는 것이다. 네 번째는 듣기 포지션(Listening position) 연습이다. 능동적으로 들을지, 수동적으로 들을지, 비판적으로 들을지, 공감하며 들을지 등 경청할 때의 포지션을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RASA (.Receive, Appreciate, Summaries, Ask, 주의-인식-요약-질문)을 의사소통할 때 연습한다.



〈그림2〉 Treasure, J.(2011)의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

출처: youtube(2011)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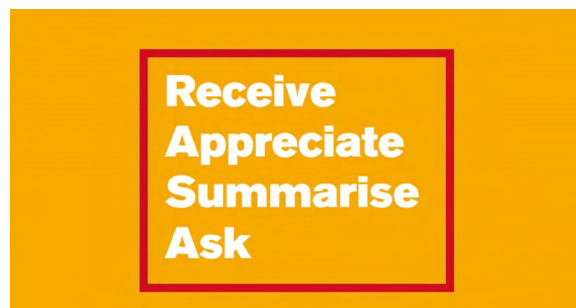
리더와 직원들과의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리더는 소통을 통해 비전과 조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지금은 소통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필요한 시대이다(KIRD, 2021). KIRD(2021)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공감적 경청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말하기 방법 즉 전달방법과 전달과정에서 편안함을 주는 제스처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특히 경청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줄리안 트레저의 5가지 잘 듣는 방법 중 RASA를 소개하였다.



〈그림1〉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출처: KIRD 과학기술인력개발원(2021. 9. 10.작성) 소통_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의 말 한마디
(KIRD 박귀찬_원장님)_1부, <https://youtu.be/GYMTewIHrD8>
(접속일: 2021. 10. 31.)

Julian Treasure(2011)은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5 ways to listen better)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침묵(Silence)이다. 다시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루 3분 정도 침묵을 연습한다. 둘째는 믹서(Mixer)이다. 여러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소리를 구별해 내는 것을 연습한다. 셋째는 일상소리즐기기(Savoring)이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일상적인 소리를 즐겨보는 것이다. 네 번째는 듣기 포지션(Listening position) 연습이다. 능동적으로 들을지, 수동적으로 들을지, 비판적으로 들을지, 공감하며 들을지 등 경청할 때의 포지션을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RASA(.Receive, Appreciate, Summaries, Ask, 주의-인식-요약-질문)을 의사소통할 때 연습한다.



〈그림2〉 Treasure, J.(2011)의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

출처: Treasure, J.(2011) "5 ways to listen better"
<https://www.youtube.com/watch?v=cSohjYQI2A>[TedVideo], 6:17:7:50
(접속일: 2022. 1. 16.)

참고 문헌 KIRD 과학기술인력개발원(2021. 9. 10.작성) 소통_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의 말 한마디(KIRD 박귀찬_원장님)_1부, <https://youtu.be/GYMTewIHrD8>[Viedo]
(접속일: 2021. 10. 31.)

TED(2011. 7. 30.) 5 ways to listen better | Julian Treasure
<https://www.youtube.com/watch?v=bvAEJ8G9I9U&t=232s>[Ted Video]
(접속일: 2022. 1. 16.)

이미지의 부적절한 인용 사례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고흐의 작품 〈자화상〉과 고흐에 대한 기술이 담겨 있는 블로그 등이 활용되어 작성된 사례임.
-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인터넷상의 많은 이미지를 인용할 때,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으로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또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한국저작권위원회, 2020:170), 온라인 유통 이미지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함.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1항)’이며, 저작권법에서는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포함) 및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등이 해당함(동법 제4조4항~8항).
- 본문에 사용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사진은 사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이 요구되지 않음.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함.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국내사용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국내 법령에 따름(한국저작권위원회, 2020.10.12.).³⁰⁾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상 및 반 고흐에 대해 기술하거나 작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경우는 보고 쓴 글에 대한 출처를 표기해야 함.
- 일반적인 지식(사실)인 경우는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일반적 지식(사실)이란 통상적인 일반 지식(역사적 날짜, 역사적 사실, 특정 학문 분야에서 확립된 사실 등)이나 객관적 사실에 불과한 정보인 것이라 할지라도, 특정인의 고유한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노력이 들어가 있는 자료는 일반적 지식(사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처표기를 해야 함(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105).

³⁰⁾ 한국저작권위원회(2020. 10. 12. 작성), 해외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해도 괜찮을까?, https://blog.naver.com/kcc_press/222113637467
(접속일: 2022. 1. 16.)

-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을 유의해야 함. 사진의 창작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창작성을 인정받은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오승종, 2020:139). SNS에 공개 자료로 올려놓은 이미지인 경우에도 그 인용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자료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과 이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저작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동법 제5조, 제6조). 단,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예외임(동법 제7조).
- 저작권법에 속했던 저작물이라도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동법 제39조). 단, 저작재산권자가 불명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음(동법 제50조).

부적절한 인용 예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1890)는 네덜란드 출생의 인상주의 작가로 선명한 색채와 정서적인 감화로 20세기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반 고흐는 일생을 통해 정신적 질환과 근심을 고통으로 겪었으며, 37세의 나이에 권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사후에야 알려진 반 고흐는 현대미술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가이다.



〈그림1〉 고흐의 자화상

■ **참고 사이트** Vincent van Gogh(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Rijksmuseu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1890)는 네덜란드 출생의 인상주의 작가로 선명한 색채와 정서적인 감화로 주고 있으며, 현대미술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본인이 생존해 있던 그 시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 2020). 매우 훌륭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생존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 그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 생존 과정에서도 정신 질환과 삶에 대한 근심, 생계를 위한 걱정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의미를 바라보게 한다.



〈그림1〉 고흐의 자화상

출처: Van Gogh V.W.(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Rijksmuseu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

■ **참고 사이트**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2020. 3. 11.작성) 현대미술 쉽게 보기
[네이버캐스트], 빈센트 반 고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889&cid=58862&categoryId=58876>
(접속일: 2021. 10. 20.)

Van Gogh V.W.(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Rijksmuseu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2020)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 2020)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2020)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2020. 3. 11. 작성) 현대미술 쉽게 보기 [네이버캐스트], 빈센트 반 고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889&cid=58862&categoryId=58876 (접속일: 2021. 10. 20.)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 (2020. 3. 11. 작성) 현대미술 쉽게 보기 [네이버캐스트], 빈센트 반 고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889&cid=58862&categoryId=58876 (접속일: 2021. 10. 20.)
Van Gogh V.W.(1887) (Van Gogh V.W., 1887)	Van Gogh V.W.(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	Van Gogh V.W.(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

4.2. 웹페이지와 블로그



웹페이지 자료의 인용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의 인용 양식(citation style)과 미국 심리학회(APA)의 APA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된 글임.
- 본 사례의 부적절한 인용표시 예시의 첫 번째로, 서울대 도서관 웹페이지의 학문분야별 대표 양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인용한 표 하단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서 부적정 사례로 제시된 글임.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은 본문이나 표 하단 두 곳 모두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나, 표의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표 하단에만 출처표기를 하여도 무방함. 이와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0:154)는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와 그림을 활용할 경우, 제시된 표나 그림의 위나 아래에 그 출처를 밝혀야 함. 또한 본문에서 출처표기를 한 해당 표와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에도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설명하고 있음.
- 올바른 인용방법의 제안 중 두 번째는 APA 웹페이지의 APA 양식에 대한 설명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발전시켜 작성한 부분이나, APA 웹페이지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서 부적정 표기로 제시된 사례임. APA 홈페이지에서 APA 양식의 시초가 되는 글, 그리고 교육자 및 연구자의 요구로 인해 APA 출판매뉴얼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아이디어를 획득 하였지만, 본 사례에서는 해당 부분을 생략하였음. 그러나 연구자가 해당 아이디어를 타인의 저작물 (이것이 기초적인 설명 자료일지라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웹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작성자(발행기관), 발행일(년, 월, 일), 페이지 제목, 사이트명, URL, 접속일 등의 정보를 모두 표기해야 함. APA 양식의 경우, 페이지의 작성자나 발행기관이 표시 되어 있지 않으면 페이지 제목으로 시작하여 출처를 표기하며, 페이지 내용이 시간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색 날짜를 표기함. 발행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행일 자리에 'NO DATA'의 약어인 'n.d.'를 표기함.³²⁾

32 Purdue Writing Lab. "Web Sources // Purdue Writing Lab." Purdue Writing Lab. (접속일: 2021. 9. 13.)

✓ 참조: A.P.A. 양식 웹페이지 출처표기

(국문) 발행기관, 발행일, 페이지 제목, 사이트 이름, URL, 접속일

(영문) Purdue Writing Lab. (n.d.). Apa Style Workshop. purdue writing lab. Purdue Writing Lab. Retrieved October 6, 2021, from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pa_style/apa_overview_and_workshop.html.

-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의 출처표기가 중요해짐에 따라 해외 주요 대학 및 관련 기관의 웹페이지에서는 스타일 자동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웹사이트 출처표기가 어려울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함.

✓ 참조: 출처표기 변환 제공 사이트

가. 한국어 사이트

- 카피킬러 출처 생성기: <https://citation.sawoo.com/ref/intro>
: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APA, Chicago, MLA, Vancouver 양식으로 총 4가지 스타일을 제공 중

나. 영문 사이트

- 퍼듀 대학: APA, Chicago, MLA의 출처표기 스타일 생성 제공

APA 양식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pa_style/apa_overview_and_workshop.html
Chicago 양식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chicago_manual_17th_edition/cmos_overview_and_workshop.html
MLA 양식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mla_style/mla_overview_and_workshop.html

부적절한 인용 예시



우리는 다양한 인용표기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참고문헌 표기 및 인용 양식이 서로 다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1\)}](#)에서는 <표1>과 같이 학문분야에 따른 인용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MLA, 사회과학 및 교육학에서는 APA, 문학, 역사학, 예술 분야에서는 Chicago – Notes & Bibliography, 자연과학 및 일부 사회과학에서는 Chicago – Author-Date, 공학 분야는 IEEE 방식이 대표적이다.

<표1> 학문분야에 따른 인용양식

학문구분	대표 양식	설명
인문학	MLA	저자권 중시 참고목록 작성시 저자명이 서명, 출판 정보보다 우선
사회과학, 교육학	APA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 위치, 최신성, 관련성을 중시하여 참고문헌 목록에서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 위치
문학, 역사학, 예술	Chicago – Notes & Bibliography	인용순서대로 각주, 미주 삽입하는 방식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 가나다 순)으로 정리
자연과학, 사회과학	Chicago – Author-Date	본문 내 인용표기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 가나다 순)으로 정리
공학	IEEE	시카고 방식에 기반한 양식 인용순서대로 본문에서 대괄호 내 숫자 표기 [1], [2]..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참고문헌 목록은 인용 순으로 정리

사회과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개발된 인용이다. APA 양식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²⁾. Bentley et al(1929)는 Psychological Bulletin 저널에 7페이지 원고 준비 지침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을 게재하였다. 이 1929년 7페이지 분량이었던 원고 준비지침은 관련 연구자 및 교육자들의 요구에 의해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어, 현재 APA 출판매뉴얼(제7판) 약40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되고 있다. 또한 APA는 온라인 튜토리얼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가 APA양식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1)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접속일:2021.12.21.)
- 2) APA(n.d.), About APA Style, 2021. 12. 21. 접속,
<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우리는 다양한 인용표기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참고문헌 표기 및 인용 양식이 서로 다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에서는 <표1>과 같이 학문분야에 따른 인용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MLA, 사회과학 및 교육학에서는 APA, 문화, 역사학, 예술 분야에서는 Chicago – Notes & Bibliography, 자연과학 및 일부 사회과학에서는 Chicago – Author–Date, 공학 분야는 IEEE 방식이 대표적이다.

<표1> 학문분야별 대표양식

학문구분	대표 양식	설명
인문학	MLA	저자권 중시 참고목록 작성시 저자명이 서명, 출판정보 보다 우선
사회과학, 교육학	APA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 위치, 최신성, 관련성을 중시하여 참고문헌 목록 에서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 위치
문학, 역사학, 예술	Chicago – Notes & Bibliography	인용순서대로 각주, 미주 삽입하는 방식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 가나다 순)으로 정리

학문구분	대표 양식	설명
자연과학, 사회과학	Chicago – Author-Date	본문 내 인용표기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 가나다 순)으로 정리
공학	IEEE	시카고 방식에 기반한 양식 인용순서대로 본문에서 대괄호 내 숫자 표기 [1], [2]..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참고문헌 목록은 인용 순으로 정리

출처: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접속일: 2021. 12. 21.)

사회과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이하 APA) 양식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개발된 인용이다. APA 양식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²⁾. Bentley et al(1929)는 Psychological Bulletin 저널에 게재된 7페이지 원고 준비 지침(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³⁾이 그 시초가 되며, 1929년 7페이지 분량이었던 원고 준비지침은 관련 연구자 및 교육자들의 요구에 의해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어⁴⁾, 현재 APA 출판 매뉴얼(제7판) 약40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되고 있다.

- 각주 1)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접속일:2021.12.21.)
- 2) APA(n.d.), About APA Style, 2021.12.21. 접속,
<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
- 3) Bentley, M., Peerenboom, C. A., Hodge, F. W., Passano, E. B., Warren, H. C., & Washburn, M. F. (1929).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Psychological Bulletin, 26(2), 57-63.
<https://doi.org/10.1037/h0071487>
 (접속일: 2021. 12. 21.)

4) APA(n.d.), About APA Style,
<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
 (접속일: 2021. 12. 21.)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도서관 (2021)	서울대학교 도서관 (2021)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접속일:2021.12.21.)
APA(n.d.),	APA(n.d.),	APA(n.d.), About APA Style, 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 (접속일: 2021. 12. 21.)
Bentley, M., et al. (1929).	Bentley, M., et al. (1929).	Bentley, M., Peerenboom, C. A., Hodge, F. W., Passano, E. B., Warren, H. C., & Washburn, M. F. (1929).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Psychological Bulletin, 26(2), 57-63. https://doi.org/10.1037/h0071487 (접속일:2021.12.21.)

SNS, 블로그의 인용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KIRD 블로그, 신문기사, 웹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작성된 조사보고서임.
- 보고서나 논문 작성 시 국내외 사례 등을 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실제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사례를 먼저 검색하게 됨. 최근 각 기관 및 협회에서 발간물을 인쇄자료 형태에서 디지털 자료로 발간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인쇄물로 발간한 자료를 블로그에 그대로 탑재하기도 함. 블로그 등의 전자매체는 기존 인쇄물보다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첫 문단은 신문기사와 블로그 글을 이용하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팀의 성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 부적정 인용표기 사례로 제시됨.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다고 해서 출처표기 없이 자유롭게 인용하여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인용할 때, 블로그 인용 방법을 잘 몰라 인용표기 자체를 주저하게 되거나 논문 또는 보고서에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었을 때 내용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생각에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블로그를 활용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블로그 자체의 신뢰성을 판단하거나 연구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 등과 논의한 후 블로그 글을 본인의 글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APA 양식의 경우 블로그 인용 시 접속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만일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 인출 날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블로그 등과 같이 변화가 빈번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접속일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인용한 블로그에 대한 인용표기는 하였으나 “ ”의 직접인용 표기나 바꿔쓰기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하여 연구부정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시로 포함하였음. 블로그 등의 온라인 자료는 기술적으로 원문 그대로 옮겨오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바꿔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글을 이용하기 쉬움. 또한, 일부 연구자는 추후에 수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원문을 수정하지 않은 채 원문을 글에 복사하여 붙여 넣은 다음, 수정하는 것을 깜박 잊어버려 의도치 않은 연구윤리 의심을 받을 수 있음. 블로그 글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타인이 작성한 글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문 인용 표기와 같이 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후 바꿔쓰기를 통해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원문을 바꿔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직접인용 표기(“ ”)를 해야 함.

부적절한 인용 예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은 17분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을 식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이 코로나19 연구를 시작한지 약 1년 만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에서의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에 대한 세미나를 20년 1월에 개최한 것이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내었다.

- 요약 -

감염병 연구팀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감염병 발생 조기경보 ② 확산예측 ③ 방역정책 제언(자문)이다.¹⁾ 조기경보는 국가별로 알려진 감염병의 국내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일이다.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모이는 300개 국내 응급실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다. 각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확산예측은 ‘감염재생산지수’를 측정해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 그려보는 것이다. 재생산지수는 주로 3가지 요인인 바이러스의 전염력, 사람들 간 접촉수준(밀접접촉량), 감염기간을 토대로 도출한다. 예측활동은 일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일이라 최선과 최악의 상황을 모두 산정한다.

- 요약 -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의 코로나19 확산예측 리포트(2021. 9. 10. 작성)²⁾에서는 백신 확산 과정에서의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3차 유행기간에서는 50~59세, 60~59세, 40~4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던 반면, 4차 유행 상황에서는 18~29세, 0~17세, 30~3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다. 이는 그간의 백신 접종 완료층이 고령자 중심이었던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참고 문헌 1) 김우현(2020.12.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42057>

(접속일: 2021. 9. 13.)

2)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2021. 9.10. 작성) 연령군, 백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 (접속일: 2021.9.13.)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은 17분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을 식별하는 기술을 최근 발표하였다.¹⁾ 이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이 코로나 19 연구를 시작한지 약 1년만의 성과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팀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에서의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에 대한 세미나를 20년 1월에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내었다.²⁾

- 중략 -

감염병 연구팀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감염병의 국내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감염병 발생 조기경보, 둘째, ‘감염재생산 지수’를 측정해 감염병의 추세 확산 예측, 셋째, 해당 전염병을 통제·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²⁾

- 중략 -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의 건국대학교 정은옥 연구팀(2021. 9. 10. 작성)에 따르면 백신 확산 과정에서의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³⁾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3차 유행기간에서는 50~59세, 60~59세, 40~4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던 반면, 4차 유행 상황에서는 18~29세, 0~17세, 30~3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다. 이는 그 간의 백신 접종 완료층이 고령자 중심이었던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참고 문헌 1) 김우현(2020. 12. 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2057>
(접속일: 2021. 9. 13.)

2) KIRD(2021. 8. 24. 작성) [人 Sight] 국가수리과학(연) 손우식 감염병연구팀장, KIRD, 접속<https://blog.naver.com/keydream/222482501927>
(접속일: 2021. 9. 13.)

3)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2021. 9. 10. 작성) 연령군, 백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 (접속일: 2021. 9. 13.)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김우현(2020) (김우현, 2020)	김우현(2020. 12. 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또는 김우현(2020)	김우현(2020. 12. 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2057 (접속일: 2021. 9. 13.)
KIRD(2021) (KIRD, 2021)	KIRD(2021. 8. 24. 작성) [人 Sight] 국가수리과학(연) 손우식 감염병연구팀장, KIRD 또는 KIRD(2021)	KIRD(2021. 8. 24. 작성) [人 Sight] 국가수리과학(연) 손우식 감염병연구팀장, KIRD, 접속 https://blog.naver.com/keyrdream/222482501927 (접속일: 2021. 9. 13.)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 교수 연구팀 (2021) (코로나19 수리모델링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TF, 2021)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2021. 9. 10. 작성)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또는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2021)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2021. 9. 10. 작성) 연령군, 백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 (접속일: 2021. 9. 13.)

4.3. 데이터 및 기타 자료



정부 발간 통계자료의 활용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국가통계지표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인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으로 구성된 글임.
- 표 1은 통계자료의 출처를 표기할 때 URL만 표기하여 인용표기 부적정 사례로 제시된 부분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경우, 발행기관, DB의 명칭, DB 작성일(갱신일), DB 발행처, DB 접속일, URL 등을 함께 기입함. URL 단독으로만 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표 2는 표 하단에 온라인 DB에 대한 출처를 표기하였으나, 보다 바람직한 출처표기 방법이 있어서 제시된 사례임. 본 사례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로 출처를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 독자가 해당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DB를 검색하는 경우, 「지역별고용조사」는 KOSIS(<https://kosis.kr/index/index.do>)뿐만 아니라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도 확인됨.
- 동일한 명칭의 통계자료 DB일지라도 해당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따라 제공되는 DB의 시간적 범위 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활용한 사이트의 명칭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적절한 인용 예시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9년 현재 46%로 지난 8년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1년 44%(550만 가구)에서 2019년도 46%(556만 가구)로 다소 증가하였다(표1). 본 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정의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이다. 유자녀 기준(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보면, 6세 이하가 44.6%, 7~12세 가구가 54.8%, 13~17세 가구가 59.5%로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표1〉 지난 10년간 맞벌이 가구 비율의 변화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맞벌이 가구수	5,241	5,201	5,175	5,331	5,358	5,545	5,456	5,675	5,662
전체 비율*	44.6	44.0	43.3	44.2	44.1	45.5	44.6	46.3	46.0
15~29세	39.0	40.3	37.7	37.8	36.8	38.6	36.8	38.6	40.1
30~39세	41.4	41.7	41.5	42.6	43.5	45.7	47.3	49.9	50.2
40~49세	52.5	52.1	50.6	51.7	51.2	52.7	52.1	54.2	54.2
50~64세	47.5	46.9	46.5	47.8	48.2	49.8	48.7	50.5	50.1
65세 이상	26.9	25.2	26.2	26.4	25.4	25.9	24.1	25.4	25.5

*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출처: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표2〉 유배우 및 맞벌이 가구와 자녀 연령과의 관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전체 (0~17세)	4,761	2,246	47.2	4,665	2,258	48.4	4,537	2,207	48.6	4,407	2,248	51	4,366	2,246	514
6세 이하	2,134	813	38.1	2,090	827	39.6	2,062	857	41.6	1,994	882	44.2	1,932	861	44.6
7~12세	1,330	684	51.5	1,308	690	52.7	1,285	659	51.3	1,318	715	54.2	1,381	758	54.8
13~17세	1,297	748	57.7	1,267	741	58.5	1,190	691	58.1	1,095	652	59.6	1,054	627	59.5

출처: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9년 현재 46%로 지난 8년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1년 44%(550만 가구)에서 2019년도 46%(556만 가구)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1〉. 본 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정의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이다. 유자녀 기준(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보면, 6세 이하가 44.6%, 7~12세 가구가 54.8%, 13~17세 가구가 59.5%로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표1〉 지난 10년간 맞벌이 가구 비율의 변화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맞벌이 가구수	5,241	5,201	5,175	5,331	5,358	5,545	5,456	5,675	5,662
전체 비율*	44.6	44.0	43.3	44.2	44.1	45.5	44.6	46.3	46.0
15~29세	39.0	40.3	37.7	37.8	36.8	38.6	36.8	38.6	40.1
30~39세	41.4	41.7	41.5	42.6	43.5	45.7	47.3	49.9	50.2
40~49세	52.5	52.1	50.6	51.7	51.2	52.7	52.1	54.2	54.2
50~64세	47.5	46.9	46.5	47.8	48.2	49.8	48.7	50.5	50.1
65세 이상	26.9	25.2	26.2	26.4	25.4	25.9	24.1	25.4	25.5

*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출처: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1~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표2〉 유배우 및 맞벌이 가구와 자녀 연령과의 관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전체 (0~17세)	4,761	2,246	47.2	4,665	2,258	48.4	4,537	2,207	48.6	4,407	2,248	51	4,366	2,246	514
6세 이하	2,134	813	38.1	2,090	827	39.6	2,062	857	41.6	1,994	882	44.2	1,932	861	44.6
7~12세	1,330	684	51.5	1,308	690	52.7	1,285	659	51.3	1,318	715	54.2	1,381	758	54.8
13~17세	1,297	748	57.7	1,267	741	58.5	1,190	691	58.1	1,095	652	59.6	1,054	627	59.5

출처: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참고 문헌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1~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통계청(2020) (통계청, 2020)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1~2019, 통계청(2020)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1~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통계청(2020) (통계청, 2020)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 통계청 또는 통계청(2020)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OECD AI 자료의 활용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OECD.AI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OECD.AI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임.
- 첫 번째 문단은 OECD.AI 관련 정보를 KISTEP(2020)의 자료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ISTEP(2020)의 인용표기를 누락한 사례임. OECD.AI 설명 내용을 KISTEP(2020)에서 사용한 표현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함.
- 나머지 내용은 OECD.AI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보고서의 일부로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그림 하단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부적정 인용 사례로 제시됨. 타인이 작성한 글이나 그림을 활용하는 경우,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와 그림이 재인용되는 경우 원출처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표/그림 하단에 출처표기는 반드시 해야 하며, 본문의 내용이 표/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본문에서는 출처 표기를 생략해도 됨.
- 온라인에서 분석 또는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사이트명, 인용된 자료, 시각화 제공자명, 구현된 날짜, URL 등의 정보를 표기하는 것이 좋음. 본 보고서에서는 MAG(Microsoft Academic Graph) 데이터(그림1~2)와 LinkedIn 데이터(그림3~그림5)가 사용되었으며 OECD 협력업체인 JSI에서 시각화한 것을 표시함.
-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주요 기구 및 국가에서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분석 및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이트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자료를 취득하고 시각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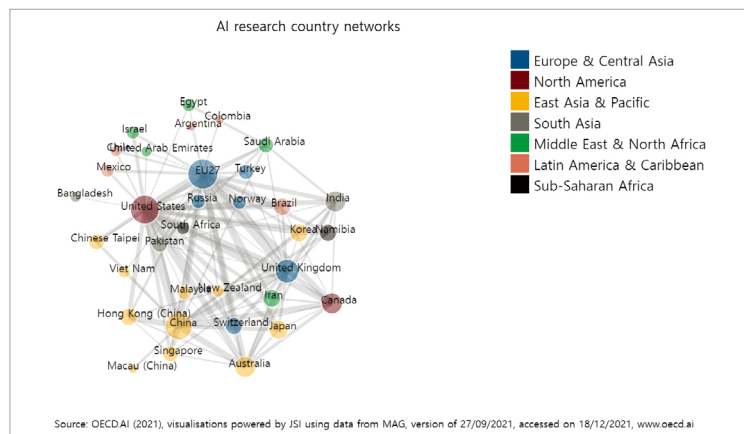
사이트명	URL	기능
지오빅데이터 오픈 플랫폼	https://data.kigam.re.kr/	디지털 연구데이터 무료 제공, 지질주제도 통합서비스 제공,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Dataon) 연계, 데이터 기반의 협력 연구 생태계 구축 등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https://dataon.kist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유 및 관리하고, 검색, 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데이터 정보시스템	http://nrcdata.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유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OECD AI Policy Observatory	http://oedc.ai	OECD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등

부적절한 인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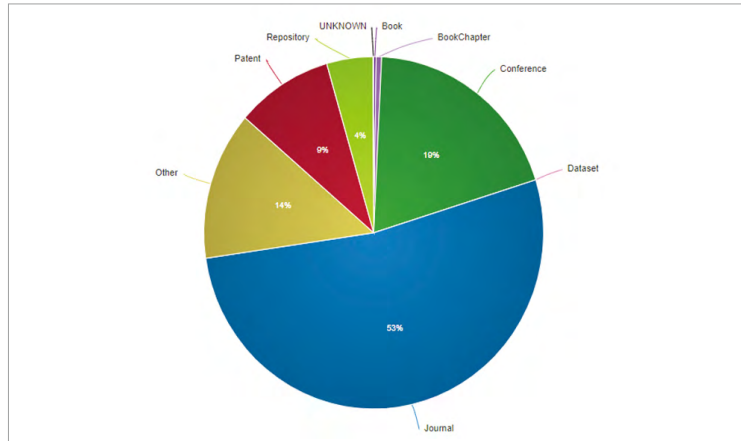
「OECD AI Policy Observatory」는 OECD가 구축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관련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AI 정책 및 정책 추진 현황, 관련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AI 연구의 국가 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기 위해 OECD.AI.(202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그림1). <그림1>의 동그라미는 1980년 이후 양국 공동으로 출판한 출판물의 누적 수를 의미한다(OECD.AI., 2021). AI 연구 국가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미국, EU27, 영국 중심으로 국가 간 AI 관련 협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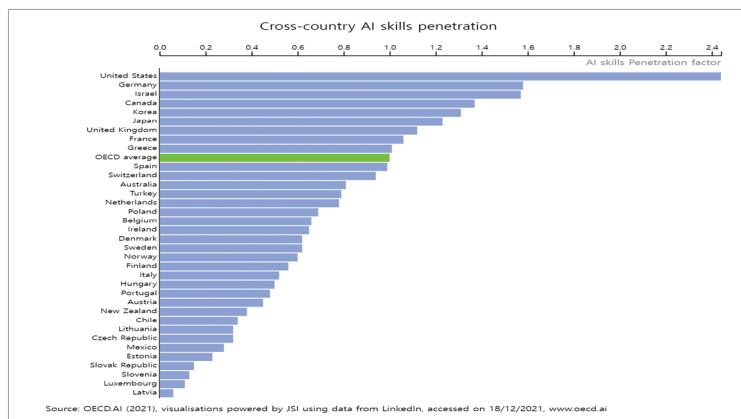
<그림1> AI 연구의 국가 간 네트워크

AI 연구 출판물은 53% 이상이 학술 논문으로 구성되며, 컨퍼런스, 특허, 책의 일부분(북 챕터) 등으로 이루어진다(OECD.AI., 2021)〈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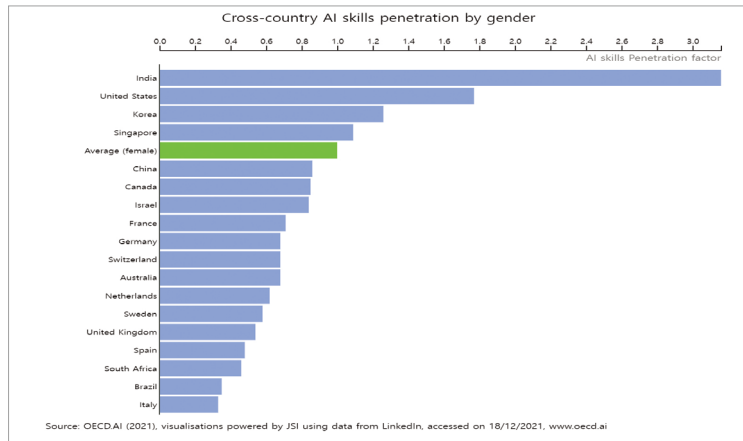
〈그림2〉 AI 연구 발행물의 구성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AI 스킬 보유 국가 순위에서 5위로 나타났다(OECD.AI., 2021). 2015년부터 2020년 평균 LinkedIn 회원 10만 명 이상인 국가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AI 스킬 보유(skill penetration) 현황은 1위가 미국, 2위가 독일, 3위가 이스라엘, 4위가 캐나다, 5위가 한국, 6위가 일본, 7위가 영국 순으로 기록 되었다. 35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는 9개로 나타났다(OECD.AI., 2021)〈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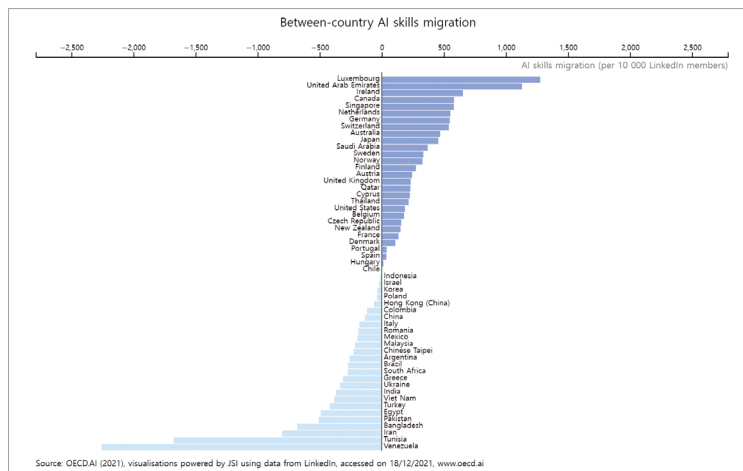
〈그림3〉 국가별 AI 기술 보유 현황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 AI 기술보유 역량은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3위로 나타난다<그림4>.



<그림4> 국가별 여성인력의 AI 기술 보유 현황

국가 간 AI 기술보유 인력의 유입유출현황을 보면,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호주, 일본 순으로 순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네수엘라, 튀니지,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그리스, 대한민국, 그리스 순으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AI., 2021)<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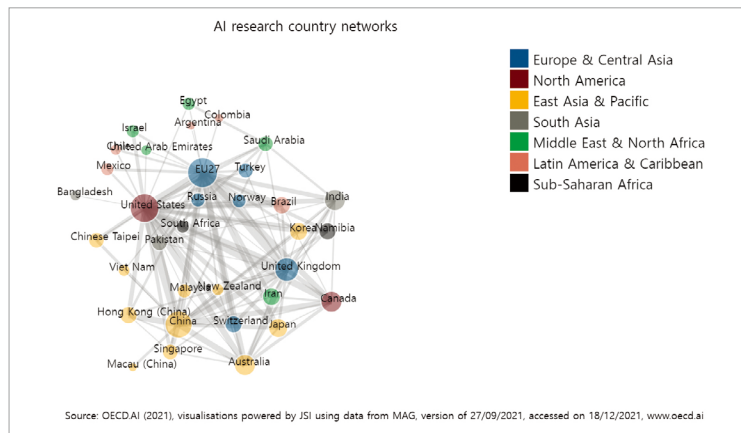
<그림 5> 국가 간 AI 기술 보유 인력의 이동현황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OECD AI Policy Observatory」은 OECD가 구축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관련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AI 정책 및 정책 추진 현황, 관련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KISTEP,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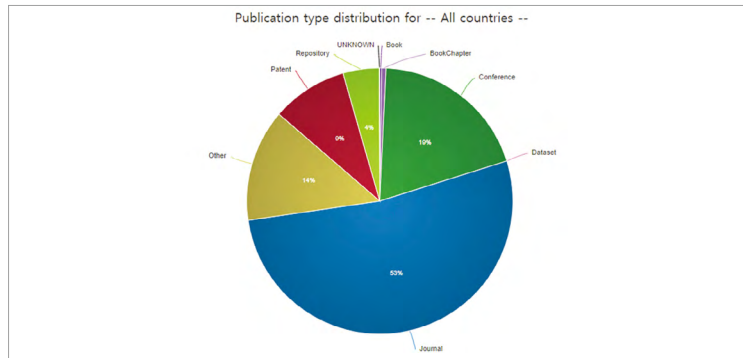
AI 연구의 국가 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기 위해 OECD.AI.(202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그림1). 〈그림1〉의 동그라미는 1980년 이후 양국 공동으로 출판한 출판물의 누적 수를 의미한다(OECD.AI., 2021). AI 연구 국가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미국, EU27, 영국 중심으로 국가 간 AI 관련 협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AI 연구의 국가 간 네트워크

출처: OECD.AI(2021), MAG(Microsoft Academic Graph)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2021. 9. 27.버전,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research&selectedVisualization=ai-research-country-networks>
 (접속일: 2021. 11. 15.)

AI 연구 출판물은 53%이상이 학술논문으로 구성되며, 컨퍼런스, 특허, 책의 일부분(북 챕터) 등으로 이루어진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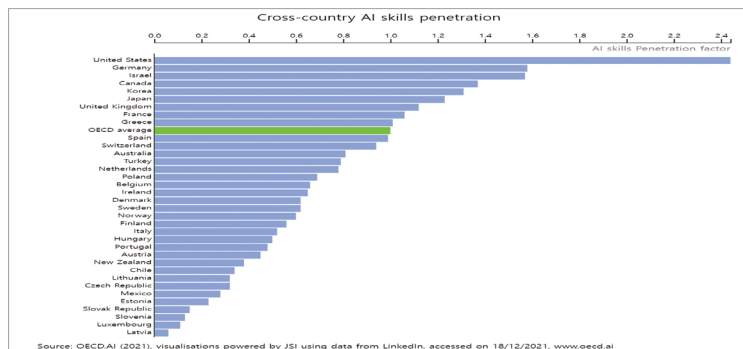
〈그림2〉 AI 연구 발행물의 구성

출처: OECD.AI(2021), MAG(Microsoft Academic Graph)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2021. 9. 27.버전,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research&selectedVisualization=ai-research-publication-type-distribution-by-country>

(접속일: 2021. 11. 15.)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AI 스킬 보유 국가 순위에서 5위로 나타났다(OECD.AI., 2021). 2015년부터 2020년 평균 LinkedIn 회원 10만 명 이상인 국가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AI 스킬 보유(skill penetration) 현황은 1위가 미국, 2위가 독일, 3위가 이스라엘, 4위가 캐나다, 5위가 한국, 6위가 일본, 7위가 영국 순으로 기록 되었다. 35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는 9개로 나타났다(OECD.AI., 2021)〈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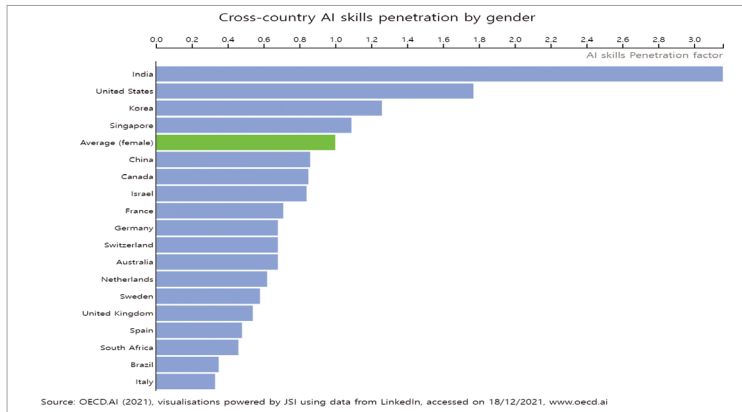
〈그림3〉 국가별 AI 기술 보유 현황

출처: OECD.AI(2021), LinkedIn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jobs-and-skills&selectedVisualization=cross-country-ai-skills-penetration>

(접속일: 2021. 1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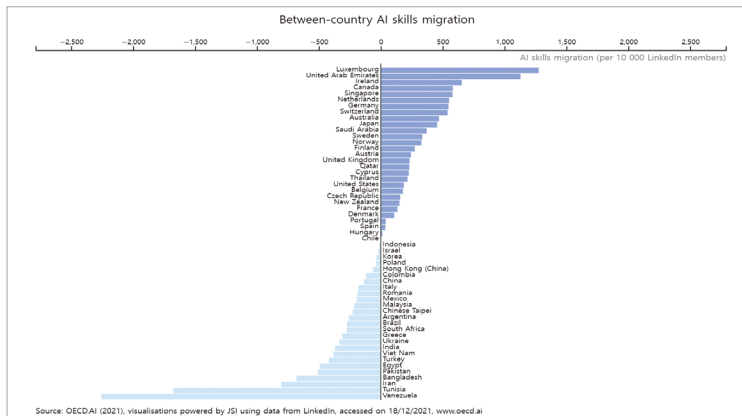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 AI 기술보유 역량은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나타난다<그림4>.



<그림4> 국가별 여성인력의 AI 기술 보유 현황

출처: OECD.AI(2021), LinkedIn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jobs-and-skills&selectedVisualization=cross-country-ai-skills-penetration-by-gender-2>
 (접속일: 2021. 12. 18.)

국가 간 AI 기술보유 인력의 유입유출 현황을 보면,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호주, 일본순으로 순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네수엘라, 튀니지,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그리스, 대한민국 순으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5>.



<그림 5> 국가 간 AI 기술 보유 인력의 이동현황

출처: OECD.AI(2021), LinkedIn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jobs-and-skills&selectedVisualization=between-country-ai-skills-migration>
 (접속일: 2021. 12. 18.)

■ **참고 문헌** KISTEP(2020.2) [과학기술인재정책 동향브리프] OECD 국가별 AI 스킬 보유 및 AI 인력 유출입 현황

https://hrstpolicy.re.kr/kistep/kr/board/BoardDetail.html?lastIndex=30&board_seq=40996&rootId=2006000&board_class=BOARD04&menuId=2006102&pageIndex=3&searchType=subject&pageIndex=1
 (접속일: 2021. 12. 18.)

OECD.AI(2021a), MAG(Microsoft Academic Graph)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2021. 9. 27. 버전,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research&selectedVisualization=ai-research-publication-type-distribution-by-country>
 (접속일: 2021. 11. 15.)

OECD.AI(2021), LinkedIn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jobs-and-skills&selectedVisualization=between-country-ai-skills-migration>
 (접속일: 2021. 12. 18.)

OECD 인벤토리 자료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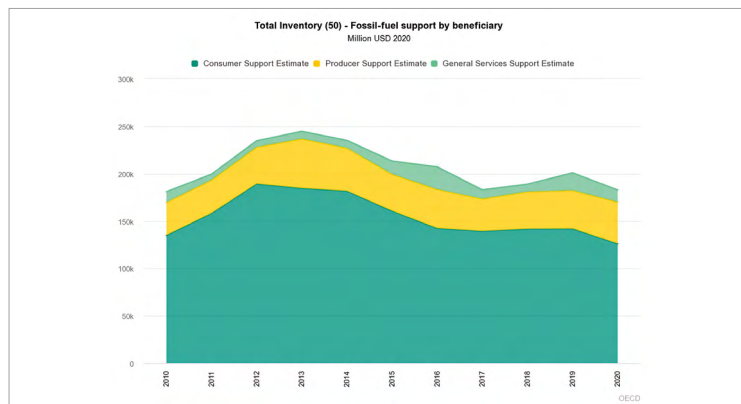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OECD 인벤토리에서 제공하는 그림과 글을 활용하였고, 표 하단에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본문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제시된 사례임. 본문의 내용은 출처를 표기하고 있는 그림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한 본문에 대한 출처표기가 필요함.

부적절한 인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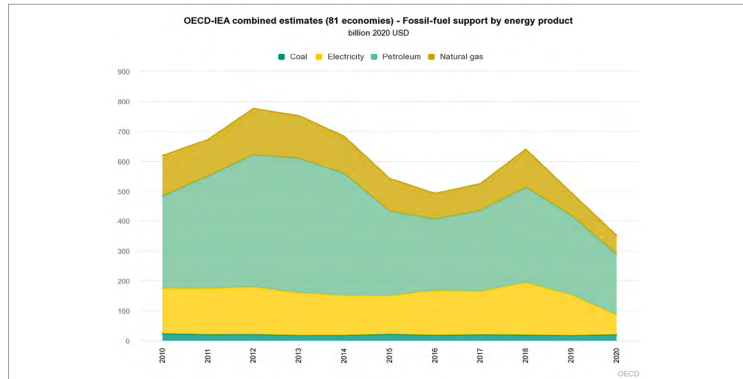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각 국가 지원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 전 세계 화석연료 소비 보조금 규모 추정에 따르면, 2020년 화석연료 소비지원금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주요 국가의 화석 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2020년의 정부 지원금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침체와 사상 최저수준의 유가가 원인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1〉 Total inventory - Fossil-fuel support by beneficiary

출처: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https://www.oecd.org/fossil-fu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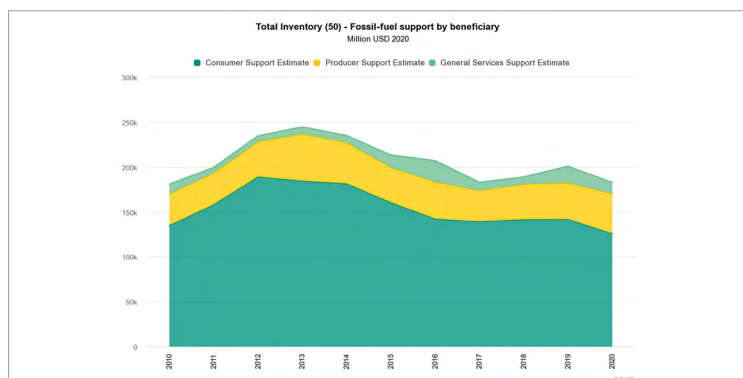
〈그림 2〉 OECD-IEA combined estimates - Fossil-fuel support by energy product

출처: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https://www.oecd.org/fossil-fuels/>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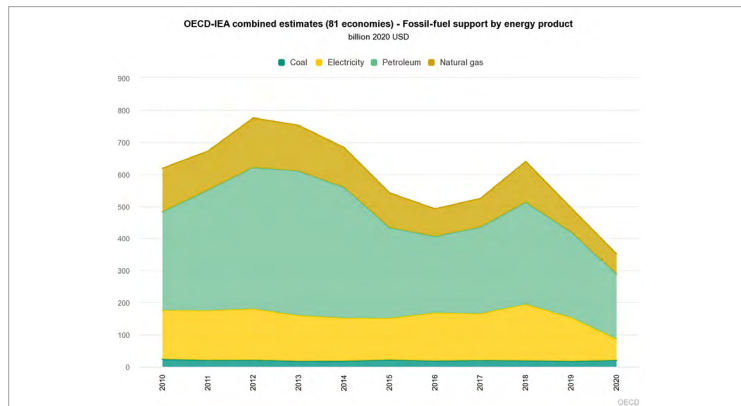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각 국가 지원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OECD·IEA, 2021). 화석연료 소비지원금의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점차 줄어들고 있다(그림1).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저탄소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 OECD·IEA(2021)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경제국의 화석 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2020년의 정부 지원금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침체와 사상 최저수준의 유가가 원인이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 보조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림 1〉 Total inventory - Fossil-fuel support by benefici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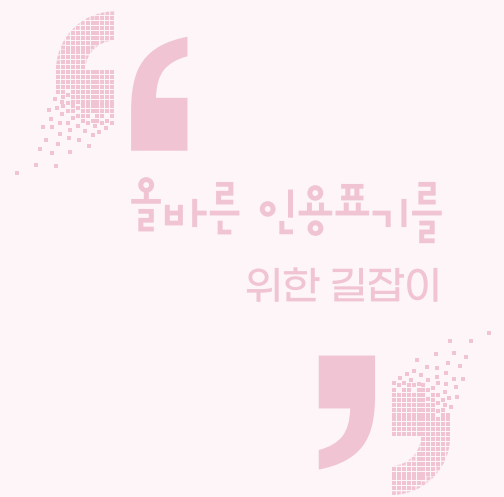
출처: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2. 18.)



〈그림 2〉 OECD-IEA combined estimates - Fossil-fuel support by energy product

출처: 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1. 15.)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
 2021. 12. 18. 접속, [https://www.oecd.org/fossil-fuels/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1. 15.\)](https://www.oecd.org/fossil-fuels/OECD%20(2021),%20Inventory%20of%20Support%20Measures%20for%20Fossil%20Fuels%20(database).%20OECD%20홈페이지,%20https://www.oecd.org/fossil-fuels/)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OECD(2021) (OECD, 2021)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2. 18.)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2. 18.)
OECD(2021) (OECD, 2021)	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1. 15.)	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1. 15.)



올바른
인용표기
위한 길잡이

부록

인용표기 관련 질의응답 사례 참고문헌

Q&A
01

타인이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미출판 내용을 자신의 연구에 소개하는 경우



현재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학술 세미나에서 타인이 발표한 연구내용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방향이 유사하다. 타인의 세미나 발표 내용은 아직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를 ㉓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㉔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㉕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구자들은 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때 타인이 공식적인 출판 절차에 의해 발표한 학술지 논문이나 저서는 물론이고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학술 세미나, 좌담회, 워크숍 등에서 구두 발표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연구 내용이 자신이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출처표기하는 방식은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³³⁾

33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8.

Q&A
02타인의 논문에 실린 표와 그림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연구 주제가 유사한 타인의 논문에 실린 표와 그림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연구 개념을 표현하는 모식도(schematic diagram)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타인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는 표로 작성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 표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표절 여부는 무단으로 활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활용한 부분이 원저작자의 핵심 아이디어 및 독창성을 얼마나 침해하였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타인 저작물 중 원저작자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독창성이 내재된 그림, 표 등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자신의 논문에 타인의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이나 표 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을 추가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하여 활용하는 경우이지만, 수정된 해당 그림과 표에는 원저작자의 학술적 기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학술적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고, 해당 그림과 표가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음을 밝혀주어야 한다. 이는 어떤 연구자의 논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연구 방법이나 논문의 핵심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후 활용하는 경우에도 원 논문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이 고안해낸 사고 구조(생각의 프레임)나 연구 방법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처럼 전적으로 그것을 고안한 타인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와 그림을 활용할 경우 출처표기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제시된 표나 그림 상단 제목 부분이나 하단부에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출처표기를 한 해당 표와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도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의 저작물 속에 포함된 표나 그림을 그대로가 아닌 자신의 연구의 맥락에 맞게 변형하였다 하더라도 원본에 대한 출처를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취지 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야 한다.³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타인의 독창적인 표현에 한정되며, 특정 도서 등의 창작물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사상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만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3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2020, p.154.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계획서의 활용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자 A’와 함께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제 선정에 실패하였다. 추후에 그 연구계획서에 기술된 연구 아이디어 및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자 A’가 아닌 ‘연구자 B’와 함께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구자들은 표절의 대상 저작물을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지 논문이나 정식으로 출판된 저서 등으로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출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연구계획서 혹은 연구과제 제안서도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대상이 된다. 연구과제 제안서에는 대부분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 배경,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 연구 아이디어, 연구 방법 등 독창성이 내재되어 있어 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보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연구계획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은 연구제안서라도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대상이 된다.

본 사안의 경우처럼 연구비 지원 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되지 않은 이전 연구과제 제안서에서 자신이 학술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새로운 연구과제 제안서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 연구자 A에 의해 작성된 아이디어, 문장 등을 원저작자인 공동 연구자 A의 승인 및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제안서에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로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로 동료심사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연구제안서나 투고 논문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관하여는 합의된 규칙이 없으나,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했다면 어떤 형태든 상황에 맞게 원저자의 학술적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³⁵⁾

35)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2.

Q&A
04

해외 국가의 역사, 법규, 정책 등에 관해 소개한 글을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 백과사전과 언론 기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역사, 법규, 기존 정책 등에 관한 글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만약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면 포괄적·개괄적으로 표기해도 되는가?³⁶⁾



특정 국가 및 기관의 제도, 법규, 정책 등은 특정 연구자의 독창적인 학술적 연구내용 및 결과가 아니고, 온라인 백과사전 및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일반 지식에 해당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지식은 특정 학문 공동체의 범위 안에서만 통용되므로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반 지식이 아닐 수 있어 이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국토 면적, 인구, 사건 사고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단순 정보인 경우처럼 누가 정리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일반적 지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히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저자의 분석이나 전문가적 견해를 가미하여 그것을 재구성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고유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출처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필자의 고유한 견해가 중심이 되는 언론사의 논설, 칼럼 그리고 정부의 공식 견해가 제시된 보도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언론 기고문 등에 들어가 있는 특정 국가 및 기관의 제도, 법규, 정책 등을 자신의 보고서 등에 활용할 때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소개한 저작자의 노력과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일반 지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3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2020, pp.152-156.

동일한 연구모형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다수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새롭게 고안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사회 현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와 해외의 연구 결과를 분리하여 국내 학술지와 해외 학술지에 각각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가?



중복게재는 일반적으로 이미 게재·출판된 자신의 논문·저서·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기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을 보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 이미 게재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로. 단, 연속 논문은 제외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이 작성한 부분에 비해 주(主)가 되어 새로 작성한 해당 연구의 독자성 혹은 학술적 독창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와 같이 동일한 연구모형을 사용하였지만 연구 대상이 국내와 해외로 다른 경우, 두 논문의 내용상 유사성이 적고 개별 논문으로서의 학술적 가치 및 독자성을 지닌다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에도 후속 논문에서 이전 논문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논문에 대해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중복게재의 유형 중 쪼개기 출판(salami publication)이 있는데, 이는 연구수행 후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고의로 여러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한 연구모형에 기반하여 얻은 연구 결과들을 개별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경우, 개별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논문을 분리하여 지나치게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상호 논문에 대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학문 분야별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후속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반드시 이전 논문을 언급하여 동료 심사자가 논문 심사 시에 해당 논문들 사이의 유사성 및 학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은 국내 및 국외 논문의 구별과 무관하게 두 개의 논문이 모두 별개의 연구 논문으로서 충분한 학술적 가치가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후속 논문에 선행 논문에서 이미 기술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논문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³⁷⁾

37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52, 63.

Q&A
06**학술지 논문에 출판된 내용을
학위 논문에 활용하는 경우**

이공계 분야 대학원생으로 현재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박사학위 과정 중에 획득한 연구 결과의 일부를 이미 국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준비 중인 박사학위 논문에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데, 적절한 출처표기 등 선행 절차는 무엇인가?³⁸⁾



최근 국내 대학의 대다수 이공학 분야 학과에서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요건으로 학위 논문 제출 이전에 자신의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저널)에 논문으로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학위과정 중에 획득한 연구 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추후 박사학위 논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와 텍스트를 포함한 본인의 연구 내용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동료 심사자들의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므로, 학술지에 발표된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에 다시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내용을 학위 논문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는 그 출처를 적절히 표시하되, 그 방식은 해당 대학의 학위 논문에 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따라야 한다.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연구 내용을 학위 논문에 다시 활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³⁹⁾ 예를 들어서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학술지 논문을 활용할 때 학위 논문 작성자가 자신이 해당 학술지 논문에 기여한 데이터 혹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공동 저자의 학술적 기여 부분이 포함된 학술지 논문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 논문에 사용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저자가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자신의 학위 논문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며,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사용한 데이터가 타인에 의해 얻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38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53, 61, 66.

39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7.

연구과제 보고서의 내용을 학위 및 학술지 논문에 활용하는 경우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획득한 연구 내용이 연구과제 보고서에 포함되어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되었다. 대학원생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획득한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는가?⁴⁰⁾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획득한 연구 결과가 해당 연구과제의 보고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이공학 및 의학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연구윤리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특정 연구과제의 결과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연구 결과를 학위 논문 혹은 학술지 논문에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 성과 발표 및 활용에 관한 연구과제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즉,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적절한 연구비 사자 표기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술지 논문에 “이 논문은 000연구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과 같이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과제 수행 중에 얻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연구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자신이 기여한 내용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타인의 연구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자신의 학위 논문에 사용하였다면 표절에 해당하게 된다.⁴¹⁾

지도 교수는 대학원생이 작성한 학위 논문에 기술된 연구 방법, 결과, 해석 및 결론 등을 활용하여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에 지도교수가 학위 논문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게 혹은 이를 요약·발췌하여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때, 대학원생이 해당 학술지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고, 그 예로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40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65, 70.

4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70.

Q&A
08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프로시딩 논문의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학술대회에서 프로시딩 형태의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추후에 정규 학술지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학술대회 프로시딩(proceedings)은 정규 학술지 논문과 형식은 매우 유사하지만 한정된 부수만이 출간되고 그 보급 경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규 학술지 논문과 달리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열람하기 어려운 회색 문헌(grey literature)으로 간주되었다. 동료심사를 거쳐서 엄격히 선정하는 프로시딩 논문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프로시딩 논문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정규 학술 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SCIE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해당 프로시딩에 실린 연구 내용을 그대로 혹은 수정, 보완하여 정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이 매우 발달하여 인문·사회 및 공학 분야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프로시딩은 과거와는 달리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상적인 학술지 논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의 학술대회 프로시딩의 경우와 같이 일부 공학계열에서는 학술대회 프로시딩을 스스로 저널이라고 하고 있다. IEEE 학술대회들은 연구자들의 발표를 접수할 때 ‘Call for abstracts’가 아닌 ‘Call for papers’라고 하며, 많은 경우 엄격한 동료심사 절차를 통해 프로시딩에 실리는 문건을 논문으로 선정하여 출판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PDF 파일의 형태로 내용이 이미 공개된 프로시딩을 활용하여 후속 논문으로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학술지 투고 시에 “본 논문은 다른 매체에 발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저자 서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프로시딩으로 발표된 논문을 새로운 학술 논문으로 발표할 때 학술지에 따라서는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IEEE에서는 이전에 발표된 자료의 일부를 새로운 논문에 재사용하는 경우 그 원 논문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새 논문이 과거의 논문에 비해 어떠한 새롭고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할 것인지를 밝혀 편집자의 승인을 받으면 자신의 학술지에 정규 논문(full paper)으로 실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책은 ‘과거에 발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내용을 실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임에도 새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IEEE의 입장이다.⁴²⁾

42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5.

여러 논문의 내용을 모아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이전에 자신이 학술지에 발표한 여러 논문의 내용을 모아 저서로 발표하고자 한다.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가? 없다면 이를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본 사안은 이전에 발표한 여러 연구 논문의 내용을 모아 독자에게 유의미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서로 출판하는 것이 자기표절 혹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느냐의 이슈이다. 대다수의 학회나 학술지 출판사에서는 논문의 출판 이후 해당 학회나 학술지에 저작권이 전부 또는 일부 귀속됨을 안내하고 있다. 물론 각 저자들에게도 논문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가 있으나, 전문을 활용한 2차 출판의 경우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도 관련이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학술지 논문의 출판사 혹은 학회로부터 사전 동의 혹은 저작권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후속 저작물인 저서에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의 출판 정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연구윤리지침」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 이미 발표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Q&A
10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차이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기표절(self-plagiarism)과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는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학술단체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복게재에는 자기표절과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자기표절과 이중게재를 포함한 중복게재는 남의 글을 훔쳐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의 표절과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자신이 발표한 과거 저작물의 일부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은 출판사와 맺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자 새로이 발표하는 글의 학술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⁴³⁾

또한 학술적 가치가 크지 않은 논문을 손쉽게 만들어내어 논문 실적을 부풀리는 부당한 행위로 연구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는 대신 “부당한 중복게재”를 2015년부터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였다.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제1항 제5호에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연구윤리지침」에는 “중복게재”를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의미는 비교되는 두 학술적 저작물이 말 그대로 거의 똑같은 것으로, 예를 들면 논문 제목이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이 같거나, 서론이나 결론 부분의 일부가 조금 바뀌었을 뿐 나머지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⁴⁴⁾ 이러한 경우를 통상적으로 중복게재 중 “이중게재”라고 부른다. “실질적으로 유사한”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전 학술적 저작물과 이후의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 방법론, 연구 구조, 내용, 논의(토론), 결론 등에서 거의 유사하다(substantially similar)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용의 일부를 바꾸었거나, 새로이 추가했다고 해도 연구자의 논지와 결론 등이 비교되는 두 저작물에서 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학술적 저작물을 의미 있게 해주는 몇 가지 주요 부분(가설, 표본 수, 연구 방법, 결과, 논의, 결론 등)에서 차이가 없이 거의 유사하다.⁴⁵⁾ 자신의 이전 논문에 기술된 서론 일부분을 새로운 후속 논문에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경우, 즉 전체 논문의 내용 중 다시 사용한 부분이 적은 경우를 통상적으로 중복게재 중 자기표절이라고 한다.

43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0.

44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6.

45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6.

참고문헌

법령 및 관련 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 일부개정)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2009. 9., 제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규칙」(2021.8.9., 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타법개정)
- 「저작권법」(법률 제17588호, 2020.12.8., 일부개정)

국내 및 해외 문헌

-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2020.
- Appearance Publishers, 『APA/MLA guidelines: Concise Guide to APA and MLA Styles』, 2021.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2018.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집필진	이원용 연세대학교 이경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혜진 세명대학교
기획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연구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발행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문의처	인재교육사업실 전문역량교육팀(sjchoi@kird.re.kr)
발행일	2022년 3월

디자인 및 인쇄 (주)다원기획 044-865-8115



